

정책연구 09-71

# 방송통신 분야 통계 분류체계 연구

문성배/정현준

2009. 12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서 언

최근 들어 방송통신융합, 신성장산업 출현 등 방송통신 관련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빠른 속도의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방송통신산업의 환경 변화가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투자계획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방송통신산업 통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UN, OECD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가들은 최근의 정보통신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보통신산업 분류체계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UN은 최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개정을 발표하였고, OECD는 이러한 ISIC의 개정에 발맞추어 기존 ICT 산업분류의 범위 및 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확한 방송통신산업 통계 생성을 통해 방송통신산업 발전 전략을 더욱 강화,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방송통신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한 방송통신산업 분류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산업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와 방송통신 부문의 정책추진방식 변화의 수용을 위해 기존 통계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정책적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제정하고 정보통신산업협회가 작성하는 정보통신산업의 연보 및 월보와 기타 유관기관에서 이를 활용해 왔지만, 2008년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방송통신 부문의 정책 범위, 정책 대상 등에 대응되는 통계생성을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통신산업의 정의 및 범위 및 방송통신 품목 분류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산업을 반

영하여 방송통신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미래융합연구실 문성배 박사의 총괄하에 정현준 주임연구원, 이경남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도움을 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정부 부처, 학계 및 일반 이용자들의 통계 이해에 도움이 되고, 방송통신 관련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방 석 호

## 목 차

서 언 .....	1
요약문 .....	9
제1 장 서 론 .....	17
제2 장 방송통신산업 정의 및 범위 .....	19
제1 절 방송통신산업의 법적 정의 .....	19
1. 방송의 정의 .....	19
2. 통신의 정의 .....	21
3. 콘텐츠의 정의 .....	22
4.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 .....	24
5. OECD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및 콘텐츠·미디어산업 정의 .....	24
제2 절 방송통신산업 정의(안) .....	26
제3 절 방송통신산업 범위 .....	27
1. 개 요 .....	27
2. 방송통신산업 가치사슬 .....	28
3. 방송통신산업 범위(안) .....	30
제3 장 국내외 분류체계 검토 .....	35
제1 절 산업통계분류의 개요 .....	35
제2 절 국내외 산업분류체계내 방송통신 부문 분류 .....	36
1.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NAICS) .....	37
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	42
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43

4. OECD의 ICT산업 및 미디어·콘텐츠 산업 분류 .....	47
제4 장 방송통신부문 분류체계 개선방향 .....	51
제1 절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개요 .....	51
제2 절 방송통신부문 분류체계 개선방향 .....	52
1. 통신서비스 .....	54
2. 방송서비스 .....	85
3. 방송통신기기 .....	91
제5 장 결 론 .....	98
참고문헌 .....	101
〈부 록〉 .....	105

## 표 목 차

〈표 2-1〉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방송 정의 .....	20
〈표 2-2〉 전기통신기본법의 통신 정의와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 구분 .....	22
〈표 2-3〉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콘텐츠 정의 .....	23
〈표 2-4〉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의 방송통신 정의 .....	24
〈표 2-5〉 OECD의 ICT산업 및 콘텐츠·미디어산업 정의 .....	25
〈표 2-6〉 방송통신산업 및 상품 정의(안) .....	26
〈표 2-7〉 방송통신산업 범위(안) .....	34
〈표 3-1〉 국내외 산업통계분류체계 현황 .....	36
〈표 3-2〉 1997 NAICS의 Information Sector(51) 분류 .....	38
〈표 3-3〉 1997 NAICS의 방송통신산업 세부 분류 .....	38
〈표 3-4〉 2002 NAICS의 Information Sector(51) 분류 .....	40
〈표 3-5〉 2007 NAICS의 Information Sector(51) 분류 .....	41
〈표 3-6〉 ISIC Rev. 4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ection J) 분류 .....	43
〈표 3-7〉 9차 KSIC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분류 .....	44
〈표 3-8〉 9차 KSIC의 방송업(60) 세분류 및 세세분류 .....	45
〈표 3-9〉 9차 KSIC의 통신업(61) 세분류 및 세세분류 .....	46
〈표 3-10〉 KSIC와 ISIC의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부문 비교 .....	46
〈표 3-11〉 OECD ICT 산업 분류 .....	49
〈표 3-12〉 OECD Content·Media 산업 분류 .....	50
〈표 4-1〉 KAIT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	52
〈표 4-2〉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 개선 방향 .....	53

〈표 4-3〉 시내전화서비스 .....	55
〈표 4-4〉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	56
〈표 4-5〉 시외전화서비스 .....	57
〈표 4-6〉 국제전화서비스 .....	57
〈표 4-7〉 지능망서비스 .....	58
〈표 4-8〉 전화서비스 가격체계 .....	60
〈표 4-9〉 인터넷전화서비스 .....	60
〈표 4-10〉 공중전화서비스 .....	60
〈표 4-11〉 기타 유선전화서비스 .....	62
〈표 4-12〉 통신서비스사업자(Carrier)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 서비스 .....	63
〈표 4-13〉 전용회선 서비스 .....	64
〈표 4-14〉 초고속망 서비스 .....	66
〈표 4-15〉 네트워크 서비스 .....	67
〈표 4-16〉 전신·전보서비스, 기타 유선통신서비스 .....	67
〈표 4-17〉 이동통신서비스 .....	70
〈표 4-18〉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	72
〈표 4-19〉 유무선통합서비스 .....	72
〈표 4-20〉 주파수공용통신(TRS) 서비스 .....	73
〈표 4-21〉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	74
〈표 4-22〉 무선표출 및 메시징 서비스 .....	75
〈표 4-23〉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 .....	75
〈표 4-24〉 위성통신서비스 .....	76
〈표 4-25〉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	79
〈표 4-26〉 인터넷 관리 및 지원서비스 .....	82
〈표 4-27〉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서비스 .....	83
〈표 4-28〉 콘텐츠 제공 및 포털 서비스 .....	84



〈표 4-29〉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	84
〈표 4-30〉 지상파방송서비스 .....	86
〈표 4-31〉 유료방송서비스 .....	88
〈표 4-32〉 프로그램 제작·공급 .....	90
〈표 4-33〉 기타 방송서비스 .....	91
〈표 4-34〉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 .....	92
〈표 4-35〉 통신기기 .....	94
〈표 4-36〉 방송기기 .....	96

## 그 립 목 차

[그림 2-1] 통신, 방송 그리고 콘텐츠 활동간 관계 .....	27
[그림 2-2] 방송산업 가치사슬 .....	29
[그림 2-3] 통신산업 가치사슬 .....	30
[그림 4-1] 접속제공 사업자의 접속료 수입 추이 .....	63
[그림 5-1]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비교 .....	98

## 요 약 문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산업분류를 포함한 통계분류는 통계청에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및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 원칙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다(통계법 22조). 하지만, 통계청 산업분류는 세부분류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개별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통계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타산업과 달리 방송통신산업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성 등 시장 실패 발생에 따른 정부의 유효한 규제 도입과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정책적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정책적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제정하고 정보통신산업협회가 작성하는 정보통신산업의 연보 및 월보와 기타 유관기관이 작성하는데 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2008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방송통신 부문의 정책 범위, 정책 대상 등에 대응되는 통계생성을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정부조직개편과는 별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방송통신부문의 분류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두 가지는 규제환경의 변화와 신규 서비스의 반영이다.

### 2. 연구목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산업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

통신부문 통계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부문 통계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부문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고, 방송통신부문 통계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3. 주요 연구내용

#### □ 방송통신산업 정의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입법예고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방송통신’과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의에 대응되는 방송통신 산업 및 상품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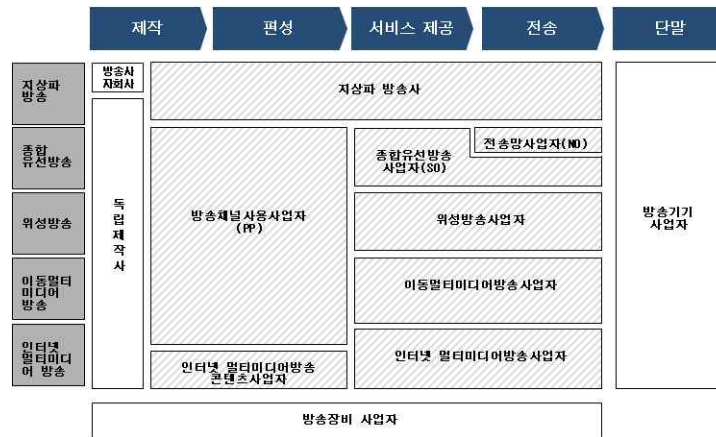
#### 〈표 1〉 방송통신산업 및 상품 정의(안)

- 
- (방송통신산업에 포함될) 후보 산업의 상품들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의 송신과 수신 기능을 실현하거나 가능하게 함을 주 목적으로 하며, 또한 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수신될 목적으로 생성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을 포함
- 

방송통신산업 및 상품 정의(안)에 따라 방송통신부문 후보 산업 목록작성을 통해 방송통신산업 범위(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방송통신산업의 정의(안)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적절한 방송통신산업 범위를 조정하고자 방송통신산업의 가치사슬을 검토하였다. 방송산업은 제작, 편성, 서비스 제공 및 전송(송출)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및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통신산업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전화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 부문에 대해 가치사슬을 구성하였다.

[그림 1] 방송산업 가치사슬



자료 : 이재영 · 유선실(2006) 수정

[그림 2] 통신산업 가치사슬



자료 : KISDI 내부 자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대략의 산업 범위를 확정하고, 가치사슬 주변부 산업의 포함 여부를 연구한 결과 방송통신산업의 범위에는 통신 부문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단말 및 장비 전반, 방송 부문의 콘텐츠 유통(Content Aggregator), 프로그램 편성, 서비스 제공, 전송 그리고 단말 및 장비가 포함된다.

〈표 2〉 방송통신산업 범위(안)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비고
방송통신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ICT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일부(TV,라디오)]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ICT
방송통신 서비스업	612 전기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ICT
방송통신 서비스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0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CM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ICT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ICT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CM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CT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CM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CM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CM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CM
	63910 뉴스 제공업(*)	CM

주: ICT는 OECD ICT산업에 포함되는 분류이고, CM는 OECD 콘텐츠 미디어 산업 분류에 포함되는 산업임

(\*) 표시 산업(4)은 방송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 국내외 산업분류체계내 방송통신 부문 분류

NAICS, ISIC, KSIC의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분류 변화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NAICS, ISIC, 그리고 KSIC에서 동일하게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송수신,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대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NAICS가 ISIC에 영향을 주고 있고 ISIC 변화가 모든 국가의 산업분류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공통점은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의 유형에 관계없이 콘텐츠의 제작과 전송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인 통신회사와 케이블방송사와의 생산활동 및 제공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ISIC와 KSIC의 web portal이나 NAICS의 인터넷 출판 및 방송 등의 신설은 인터넷 산업이 분류체계내 독립적인 산업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VoIP, Mobile Broadband 등의 신규서비스는 기존 유선, 무선, 위성 등 인프라 기반의 분류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에도 방송 및 통신 분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표 3〉 KSIC와 ISIC의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부문 비교

	9차 KSIC	ISIC Rev. 4	2007 NAICS
방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송출 산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송출 산업은 유선 통신업으로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송출 산업은 유선 통신업으로 분류</li> </ul>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업을 통신업에 포함</li> <li>기타 전기통신업내 통신 재판매업이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업은 운송 및 창고업으로 분류</li> <li>통신재판매업은 정보의 송수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업만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업은 운송 및 창고업으로 분류</li> <li>통신재판매업은 정보의 송수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업만을 포함</li> </ul>
정보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출판 및 방송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음</li> <li>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제공업을 1차 자료 가공 여부를 기준으로 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출판 및 방송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음</li> <li>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따로 분리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출판 및 방송을 구분하여 웹검색포털과 함께 분류</li> <li>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따로 분리하지 않음</li> </ul>

#### □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 개선방향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안)은 기존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품목 중심으로 분류체계의 구조를 개선하였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분류체계를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그리고 방송통신기기로 변경하였다.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안)은 신규 서비스를 반영하여 품목 분류체계로서의 특징을 살리기는 동시에 학술적 목적, 정책적 목적 등 통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로 분리하였고,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유선통신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하여 품목 분류체계의 특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방송서비스는 지상파방송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프로그램 제작·공급, 기타 방송서비스로 구분하고 하위 항목을 구체화하였다. 정보통신기기는 방송통신기기로 변경하면서, 방송통신과 관계가 적은 정보기기 일부 및 부품을 삭제하였다. 세부적으로 IPTV, M2M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반영하였으며, 통신 도매시장을 파악하고자 통신서비스사업자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서비스를 신설하고, FMC서비스,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을 신설하였다.(그 외 세부 내용은 본문 참고)

〈표 4〉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 개선 방향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000 정보통신서비스	□ 통신서비스
1100 기간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1200 별정통신서비스	○ 무선통신서비스
1300 부가통신서비스	○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1400 방송서비스	○ 부가통신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2000 정보통신기기 2100 통신기기 2200 정보기기 2300 방송기기 2400 부품	<input type="checkbox"/> 방송서비스 ○ 지상파방송서비스 ○ 유료방송서비스 ○ 프로그램 제작·공급 ○ 기타 방송서비스
3000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3100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 컴퓨터관련서비스 3300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3400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방송통신기기 ○ 통신기기 ○ 방송기기

#### 4. 결 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수요에 대응되는 방송통신부문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산업 혹은 상품의 정의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방송통신의 개념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며, 범위는 정책적 수요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방송통신기기와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세부 분류체계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하고자 하였다.

## 제 1 장 서 론

산업분류를 포함한 통계분류는 통계청에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및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 원칙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다(통계법 22조). 하지만, 통계청 산업분류는 세부분류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개별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통계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타산업과 달리 방송통신산업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성 등 시장 실패 발생에 따른 정부의 유효한 규제 도입과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정책적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정책적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제정하고 정보통신산업협회가 작성하는 정보통신산업의 연보 및 월보와 기타 유관기관이 통계를 작성하는데 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2008년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방송통신 부문의 정책 범위, 정책 대상 등에 대응되는 통계생성을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재는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 산업 및 시장의 규모나 생산 활동과 관련된 통계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조직개편과는 별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방송통신부문의 분류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두 가지는 규제환경의 변화와 신규 서비스의 반영이다. 기간, 별정, 부가 등 기존의 설비기반 중심의 사업자 및 역무 분류에 기반을 둔 현행 정보통신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가 동일한 생산구조를 반영한다는 산업분류의 원칙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존재하나 시장 규모, 서비스 확산 등 수요 변화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All-IP화에 따라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각 계층별 규제 적용(수평적 규제)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를

고려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PTV, 와이브로, 인터넷 전화 등 신규 서비스들을 분류체계 내에 포함시키거나 적합한 분류로의 조정이 필요하며, 유무선 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다양한 부가서비스 출현 등으로 신규서비스의 수용과 적절한 분류를 위한 분류체계의 수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 규제환경변화, 신규서비스 등을 고려한 방송통신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방송통신산업의 법적 정의를 검토하고 통계적 범위 선정을 위한 방송통신산업 및 상품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산업 및 상품 정의에 대응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산업범위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방송통신 부문과 관련한 국내외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세부 상품 혹은 서비스별 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향후 방송통신부문 통계 분류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제 2 장 방송통신산업 정의 및 범위

### 제 1 절 방송통신산업의 법적 정의

방송통신 부문의 분류체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산업 및 상품의 범위를 먼저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 산업 및 상품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방송통신 산업 및 상품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기에 앞서 관련 법률에서 제시한 방송통신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OECD에서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산업과 콘텐츠·미디어산업에 대한 정의도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방송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 정의되어 있으며, 통신(전기통신)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다. 이 밖에도 입법 예고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는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는 방송통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콘텐츠의 경우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콘텐츠의 형태 및 목적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방송법의 방송프로그램도 콘텐츠로 볼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지 않은 방송통신콘텐츠를 정의하고 있다.

#### 1. 방송의 정의

방송법 제2조 1항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인터넷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제

외)과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에 대한 분류도 제시하고 있다. 방송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은 이용기술 혹은 인프라에 따라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 그리고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의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표 2-1〉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방송 정의

<p>방송법 (2조 1항)</p>	<p>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p>
<p>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조 1항)</p>	<p>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p>

방송법상에 정의된 방송은 엄밀히 구분하면 두 가지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과 관련된 활동과 방송프로그램의 송출활동으로 구분된다. 방송법은 방송을 이 두 가지 활동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송은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IPTV 등 인터넷 미디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2조 1항)은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송신활동으로 규정된 방송법상의 방송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방송의 양방향성과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도 방송사업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사업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위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으로 구분된다.

## 2. 통신의 정의

통신의 법률상 정의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항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송법에서 정의된 방송의 경우 전달되는 정보(방송프로그램)의 생성활동을 포함한 반면 전기통신의 경우 전달되는 정보의 생성은 전기통신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의 경우 공중에게 송신하는 단방향성 성격을 띠고 있으나 통신은 송신활동과 수신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양방향적 성격을 띤 활동이라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2-2〉 전기통신기본법의 통신 정의와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 구분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1항)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전기통신기본법은 통신의 분류는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에서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통신역무는 전자기신호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 구성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과 구내통신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 3. 콘텐츠의 정의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법률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

텐츠산업발전법 등이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3항)은 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제2조 4항)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조)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도 문화산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방송법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일부 문화산업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콘텐츠의 정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온라인디지털컨텐츠를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전기통신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과 컴퓨팅 기술이 결합되어 처리되는 모든 정보를 온라인디지털콘텐츠로 간주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3〉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콘텐츠 정의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2조)	3.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컨텐츠를 말한다.



#### 4.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 정의된 방송의 개념과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의된 전기통신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방송통신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방송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방송통신콘텐츠는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을 의미한다(제2조 2항).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의 방송통신 정의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산업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의 통신에 대한 정의와 비교해 보면, 암묵적으로는 기존 방송의 정의가 통신에 포함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정의된 방송통신이 방송법에서 정의된 방송을 포함하고 있고 방송통신콘텐츠의 송수신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콘텐츠의 생산 활동도 방송통신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표 2-4〉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의 방송통신 정의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li> <li>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방송</li> <li>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li> </ol> </li> <li>2. “방송통신콘텐츠”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li> </ol>
--------------------------	-------------------------------------------------------------------------------------------------------------------------------------------------------------------------------------------------------------------------------------------------------------------------------------------------------------------------------------------------------------------------------------------------------------------------------------------------

#### 5. OECD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및 콘텐츠·미디어산업 정의

OECD는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를 구성하는 두 산업 부문을 정보통신기

술(ICT)산업과 콘텐츠·미디어산업으로 양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sup>1)</sup>

OECD는 2007년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정의를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ICT 산업에 포함될) 후보 산업 상품들의 주 목적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 및 표시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 및 통신기능을 실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07b). 1998년 처음 제시되었던 ICT산업의 정의와의 차이점은 2007년 정의에서는 ‘탐지, 계측, 기록 혹은 물리적 처리의 제어를 위해 전자적 처리를 이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ICT기술의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ICT산업 범위를 정보의 처리 및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한한 것이다.

콘텐츠·미디어 산업 정의도 2007년 제시되었는데, “(콘텐츠·미디어 산업에 포함될) 후보 산업 상품들의 주 목적은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정보, 교육, 혹은 오락 등을 제공하는 것임. 이러한 산업들은 콘텐츠의 제작, 출판, 유통 등을 수행하며, 여기서 콘텐츠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의미함”으로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표 2-5〉 OECD의 ICT산업 및 콘텐츠·미디어산업 정의

ICT산업	The production(goods and services) of a candidate industry must primarily be intended to fulfil or enable the func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transmission and display
콘텐츠·미디어 산업	The production(goods and services) of a candidate industry must primarily be intended to inform, educate and/or entertain humans through mass communication media. These industries are engaged in the production, publishing and/or the distribution of content(information, cultural and entertainment products), where content corresponds to an organised message intended for human beings.

1) OECD의 정보통신기술산업 및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분류는 제3장을 참조.

## 제 2 절 방송통신산업 정의(안)

방송통신 부문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방송통신 산업 및 상품의 정의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하나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만큼 법률 상에서 제시된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부합하는 정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예고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방송통신’과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의에 대응되는 방송통신 산업 및 상품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방송통신’과 ‘방송통신콘텐츠’는 통계분류를 고려하지 않은 정의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통신콘텐츠의 경우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은 산업분류적인 관점에서는 광범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존재한다.

방송통신 부문의 분류체계에 콘텐츠나 방송통신기기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관해서 특별한 통계적 혹은 학문적 원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서비스나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에 따른 변화가 콘텐츠 부문과 기기 부문의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콘텐츠나 기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송통신 산업 및 상품의 정의를 담고 있다. 방송통신산업에 포함된 생산단위의 생산 활동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정보의 송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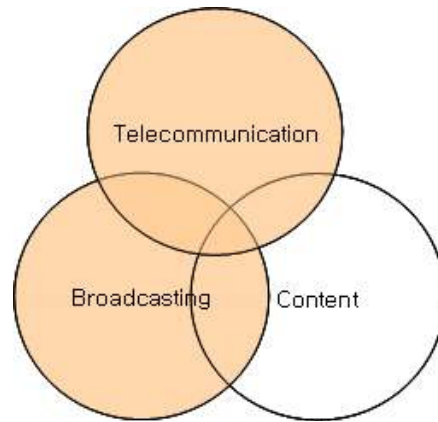
〈표 2-6〉 방송통신산업 및 상품 정의(안)

- 
- (방송통신산업에 포함될) 후보 산업의 상품들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의 송신과 수신 기능을 실현하거나 가능하게 함을 주 목적으로 하며, 또한 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수신될 목적으로 생성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을 포함
-

을 실현하거나 가능하게 함을 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전자적으로 송수신 될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위에서 정의된 방송통신산업과 기존 방송, 통신, 그리고 콘텐츠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방송통신산업은 방송과 통신의 합으로 볼 수 있으며, 콘텐츠와의 교집합을 포함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콘텐츠는 방송통신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2-1) 통신, 방송 그리고 콘텐츠 활동간 관계



### 제3 절 방송통신산업 범위

#### 1. 개 요

본 절에서는 방송통신산업 및 상품 정의(안)에 따라 방송통신부문 후보 산업 목록 작성을 통해 방송통신산업 범위(안)을 도출한다. 우선 방송통신산업의 정의(안)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적절한 방송통신산업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방송통신부문 후보 산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OECD의 ICT 및 콘텐츠·미디어 산업내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산업의 대부분이 포

함하기 때문에 OECD의 ICT 및 콘텐츠·미디어 산업분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산업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sup>2)</sup>의 관련 산업 군을 검토하였고<sup>3)</sup>, 마지막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를 살피면서 방송통신산업 및 관련 산업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다수 해외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체계를 참고하였고, 학계, 통계작성기관, 정부부처, 관련 업계의 자문을 거쳤다.

## 2. 방송통신산업 가치사슬

방송통신산업 후보 산업 목록 작성에 있어 방송통신산업의 가치사슬을 검토하였다.

### 가. 방송산업

방송산업은 제작, 편성<sup>4)</sup>, 서비스 제공<sup>5)</sup> 및 전송(송출)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및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은 제작과 편성, 서비스제공 및 전송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경우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때 제작 및 편성 단계에 위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는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 방송, 위성방송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며, 그 외에도 제작 단계에 방송사 자회사 및 독립제작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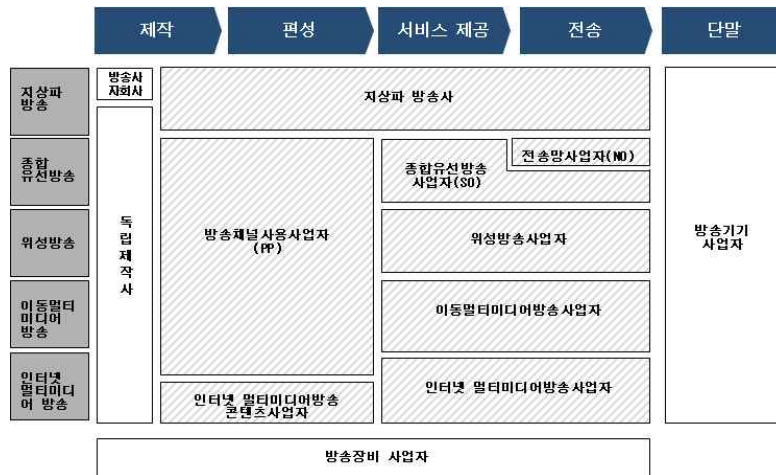
2) 정보통신단체표준 승인, TTAS.KO-09.0002/R1, 2007년 12월

3) 정보통신산업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의 보다 정확한 KSIC(9차) 분류 연계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연계표를 협조 받았다.

4)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간을 배열하는 것

5) 편성된 프로그램들의 채널 부여, 광고 삽입, 과금 등

〔그림 2-2〕 방송산업 가치사슬



자료: 이재영 · 유선실(2006) 수정

나. 통신산업

통신산업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분류하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전화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 부문에 대해 가치사슬을 구성하였다.

전화서비스는 일반전화 혹은 인터넷전화를 통해 이용자의 음성 통화를 구성하는 서비스로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의 PSTN과 IP 망 등 물리적 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터넷서비스는 CP와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IP 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한편 이동전화 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동 중 이용자의 음성 통화를 구성한다. 이때 접속망에서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며, 전송망 부분인 기지국에서 기지국까지는 전용회선을 이용한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CP, 포털(이통사, MVNO 포함) 등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도 MVNO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MVNO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임대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혹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3) 통신산업 가치사슬



자료: KISDI 내부 자료

### 3. 방송통신산업 범위(안)

방송통신산업 범위는 가치사슬 분석을 반영하여 OECD의 ICT 및 콘텐츠·미디어 산업분류, 정보통신산업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의 관련 산업군,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방송통신산업 정의에 부합하면서도 방송통신산업의 실질적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가치사슬 분석을 반영하여 분석하면서 통신산업의 경우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부문, 컴퓨터 등 정보기기의 포함 여부, 방송산업의 경우 콘텐츠 제작 부문 등 일부 부문 포함 여부가 검토되었다. 아래에서는 방송통신산업 범위(안) 확정 과정에서 논의된 콘텐츠 제작(방송통신목적),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산업, 기타 방송통신 연관 산업 포함 여부 및 범위 등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산업 범위(안)을 제시한다.

#### 가. 콘텐츠 제작 포함 여부

콘텐츠 포함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 목적의 콘텐츠로 논의를 한정하였다.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통신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작 및 유통 과정을 모두 포함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 최근의 원 소스 멀티 유즈 추세에 따라 방송통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든 것들이 있으므로 인터넷 제공을 주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만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죄와 벌과 같은 책이 인터넷에서 e-book으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e-book에 대해서만 포함한다는 것인데, 원 저작물은 방송통신산업의 생산물로 보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 콘텐츠도 제작, 유통의 과정을 거치는데, 방송 콘텐츠의 경우 유통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작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외에도 영화 제작 등도 겸업하는 독립 제작사 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 제작의 경우 방송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 나.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산업 포함 여부

통신산업의 경우 가치사슬의 전반이 방송통신산업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 통신 사업자에게 전기 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 통신 역무 이외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산업들이 방송통신산업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기간 통신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은 전형적인 통신산업과 비교하여 생산 및 소비 구조가 서로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유통(전자상거래), 금융(온라인 금융), 교육(온라인 교육) 등은 방송통신산업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업(KSIC 47911), 기타통신판매업(KSIC 47919), 금융(인터넷뱅킹, KSIC 64), 보험(온라인 보험, KSIC 65), 증권중개업(온라인상의 증권중개서비스\*, KSIC 661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KSIC 68221), 고용알선업(온라인상의 인력알선서비스\*, KSIC 7511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KSIC 75991), 교육(온라인 교육



학원\*, 대학교\*, KSIC 85), 정보시스템서비스(KSIC 75320) 등의 산업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이지만, 방송통신산업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sup>6)</sup>

#### 다. 기타 방송통신 연관 산업 포함 여부

그 외에도 가치사슬 주변에 있으면서 방송통신산업에 포함 여부가 논의 될 수 있는 기타 방송통신 연관 산업이 있다.

이러한 산업에는 방송통신망과 직접 연관이 있는 광케이블(KSIC 283), 일반통신공사업(KSIC 42321), 내부 통신배선공사업(KSIC 42322), 방송통신기기와 직접 연관이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운영체제(OS) 개발, KSIC 58221), 방송통신 수리업인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KSIC 95121), 통신장비 수리업(KSIC 95122), 가전제품 수리업(가정용 전자제품 수리(TV, 라디오), 가정용 통신기기 수리, KSIC 95310), 콘텐츠 제작과 직접 연관이 있는 녹음시설 운영업(KSIC 59202), 광고매체판매업(KSIC 71392), 방송통신 관련 유통 부문인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KSIC 46510), 통신장비 및 부품도매업(KSIC 46522), 소프트웨어 소매업(KSIC 47311), 통신기기 소매업(KSIC 47312), 가전제품 소매업(KSIC 47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KSIC 69320), 그 외에도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KSIC 91222) 등은 제외하였다.

#### 라. 방송통신산업 범위(안)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대략의 산업 범위를 확정하고, 가치사슬 주변부의 산업의 포함 여부를 연구한 결과 방송통신산업의 범위에는 통신 부문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단말 및 장비 전반, 방송 부문의 콘텐츠 유통(Content Aggregator), 프로그램 편성, 서비스 제공, 전송 그리고 단말 및 장비가 포함된다.

정리하면 콘텐츠 관련하여서는 방송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유통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위하는 원 산업은

6) 예시의 괄호 안 서비스 중 (\*)로 표시한 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서 해당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예시이다.

방송통신산업 범위에서 제외하지만, 방송통신산업 분류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서는 산업 수준에서 부가통신업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sup>7)</sup> 마지막으로 기타 방송통신 연관 산업은 방송통신산업 정의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산업 범위(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게임 개발 등 방송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산업이 있는 반면 출판, 영상, 음악 등과 같이 불분명한 산업이 병존한다. 이에 불분명한 산업의 경우 방송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방송통신산업 범위(안)과는 별도로 방송통신산업 분류체계에서는 정책적 필요성,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수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를 한다. OECD에서도 ICT 산업분류 및 콘텐츠·미디어 품목분류에서 ICT 혹은 콘텐츠·미디어 산업은 아니지만, 해당 산업의 품목을 포함하는 예가 있다.<sup>8)</sup>

방송통신산업 범위(안)은 크게 방송통신 제조업과 방송통신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방송통신 제조업에는 통신 및 방송장비(KSIC 264), 영상 및 음향기기(KSIC 265 일부) 산업이 포함된다. 그리고 방송통신 서비스업에는 전기통신업(KSIC 612), 방송업(KSIC 60),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KSIC 63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KSIC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KSIC 6399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KSIC 5821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KSIC 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KSIC 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KSIC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KSIC 59130)(\*), 뉴스 제공업(KSIC 63910)(\*))이 포함된다.<sup>9)</sup>

7)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는 “통신업에서 법률에서 사용하는 부가통신업과의 개념이 불일치하고 조사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업을 삭제”하였다.

8) OECD ICT 생산물 5개, 콘텐츠·미디어 생산물 3개가 이에 해당한다.

9) (\*) 표시 산업(4)은 방송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표 2-7〉 방송통신산업 범위(안)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비고
방송통신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ICT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일부(TV, 라디오)]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ICT
방송통신 서비스업	612 전기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ICT
	60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CM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ICT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ICT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CM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CT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CM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CM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CM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CM
	63910 뉴스 제공업(*)	CM

주: ICT는 OECD ICT산업에 포함되는 분류이고, CM는 OECD 콘텐츠·미디어 산업 분류에 포함되는 산업임

(\*) 표시 산업(4)은 방송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 제 3 장 국내외 분류체계 검토

### 제 1 절 산업통계분류의 개요

국내외 분류체계내 방송통신 부문 분류를 검토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산업통계 분류가 무엇이고 국내외 어떠한 분류체계들이 존재하는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산업통계분류는 산업 및 시장의 분석, 정책의사결정 등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산업과 관련된 기초 통계 자료를 그룹화 혹은 총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산업통계분류는 그 분류의 개념적 기반이 공급측인지 수요측인지에 따라 생산활동분류와 생산물활동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활동분류는 공급측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비슷한 생산구조 혹은 생산과정을 가지고 있는 생산단위를 같이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 혹은 서비스의 생산은 노동, 자본, 중간재와 같은 생산요소와 기술을 조합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생산함수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활동분류는 동일한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는 생산단위를 같이 분류하는 것이다. 생산활동분류에 기반하여 작성된 통계는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 집약도 분석, 산업의 생산성 분석과 같이 산업의 생산구조를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반면, 생산물분류는 수요측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용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즉, 제품 혹은 서비스의 수요가 대체적이거나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동일한 분류로 간주하게 된다. 생산물분류에 기반하여 작성된 통계는 시장점유율 분석, 마케팅 분석 등 시장 수요분석에 이용된다.

생산활동분류와 생산물분류의 대표적인 분류체계로는 UN이 작성하는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와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가 있다. 또한 각 국가별로 ISIC와 CPC에 대응되는 산업분류와 생산물

분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와 NAPCS(North American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가 있으며, 유럽의 경우 NACE(European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와 CPA(European Classification of Products by Activity)가 있다. 한국은 ISIC와 대응되는 산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있으며 아직까지 CPC에 대응되는 생산물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3-1〉 국내외 산업통계분류체계 현황

	생산활동분류	생산물분류	개정현황
유엔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ISIC Rev. 4(2008), CPC Rev. 2(2008)
북미	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PCS(North American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2007 NAICS, NAPCS는 일부만 완료
EU	NACE (European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CPA(European Classification of Products by Activity)	NACE Rev. 2(2008), CPA 2008
한국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 제2 절 국내외 산업분류체계내 방송통신 부문 분류

본 절에서는 국내외 산업분류체계내 방송통신 부문에 대한 분류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공통분류체계인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내 방송통신부문 분류체계와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UN이 최근 개정한 제4차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통계청이 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 방송통신부문 분류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OECD가 설정한 정보통신기술

(ICT)산업과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분류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북미표준산업분류의 경우 세계 각국이 산업분류수립에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류체계이므로 북미표준산업분류내 방송통신부문 분류의 변화과정에 대한 검토는 국내 방송통신부문 분류체계 수립에 있어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1.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NAICS)

### 가. NAICS의 수립 배경 및 NAICS 1997의 방송통신부문 분류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NAICS)는 미국이 193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C)를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생산활동기준을 적용한 분류로서 NAFTA의 효과 분석 등을 위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채택하였다(OMB, 1994). 1997년 수립된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는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7년 북미산업분류체계가 도입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정보산업군(Information Sector)을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정보산업군은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정보의 전송 혹은 전송 수단의 제공, 정보의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산업들은 출판(소프트웨어 포함), 영화 및 음반,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온라인 포함) 및 데이터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과 통신은 3자리 코드에서 하나로 묶여있는데, 이는 정보산업군에서 방송업과 통신업이 정보의 전송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업(514)의 하위 4자리 분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지상파), 케이블 방송업(위성 포함), 통신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각 산업의 전송 방식과 제공 서비스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OMB, 1995). 즉, 통신업은 정보의 1대1 송수신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제작과 전송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상파와 케이블방송과 구분된다. 또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콘텐츠의 제작과 전송을 모두 수행하나 지상파는 대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고 광고시간 판매, 보조금

기타 수익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케이블방송은 일반적으로 수신료를 기반으로 가입자에게 전송한다(narrowcast)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표 3-2〉 1997 NAICS의 Information Sector(51) 분류

3-digit	4-digit
511 출판	5111 Newspaper, Periodical, Book, and Database Publishers
	5112 Software Publishers
512 영상 및 음반	5121 Motion Picture and Video Industries
	5122 Sound Recording Industries
513 방송통신	5131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5132 Cable Networks and Program Distribution
	5133 Telecommunications
514 정보서비스 및 데이터 처리	5141 Information Services
	5142 Data Processing Services

자료: U.S. Census

5자리 코드의 경우 지상파는 음성과 영상 신호의 구분에 따라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으로 나뉘며 케이블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구매 및 제작 등의 활동을

〈표 3-3〉 1997 NAICS의 방송통신산업 세부 분류

4-digit	5-digit
5131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51311 Radio Broadcasting
	51312 Television Broadcasting
5132 케이블 방송 및 프로그램 전송	51321 Cable Networks
	51322 Cable and Other Program Distribution
5133 통신	51331 Wired Telecommunications Carriers
	51332 Wireless Telecommunications Carriers, Except Satellite
	51333 Telecommunication Resellers
	51334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51339 Other Telecommunications

자료: U.S. Census

하는 프로그램공급업과 이를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산업으로 구분된다. 통신업은 이 용하는 인프라에 특성에 따라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를 소유 혹은 운용하지 않고 단순히 교환장치만을 설치, 운용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대가를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산업은 5자리에서 통신재 판매업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통신재판매업의 생산활동이 통신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운용하는 활동과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산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 나. NAICS 2002와 NAICS 2007의 방송통신부문 분류의 변화

NAICS의 2002년도 개정은 정보산업군(Information sector)과 방송통신부문의 분류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정보산업군내에서는 하위 산업으로 인터넷 출판 및 방송산업(516)과 ISP, 웹검색포털, 데이터처리 산업(518)을 신설하였다. 인터넷 출판 및 방송은 인터넷의 빠른 성장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출판 및 방송활동을 영위하는 산업을 한 산업으로 분리시켜 신설하였다. 또한, 웹검색포털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감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웹검색포털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ISP, 웹검색포털, 데이터처리 산업(518)을 새로운 하위산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부문 분류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NAICS 1997의 경우 3자리 코드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묶어놓았던 방송통신산업을 NAICS 2002에서는 방송업(515)과 통신업(517)으로 서로 분리시켜 3자리 코드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혹은 콘텐츠의 제작하고 이를 유통하는 활동과 전송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활동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OMB, 2000).

정보 혹은 콘텐츠의 제작활동을 함께 수행하는지 여부가 방송업과 통신업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 NAICS 1997에서 4자리 코드로 하나로 묶여있던 케이블 방송업과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 전송업을 분리하여 케이블방송은 방송업에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 전송은 통신업으로 분리하였다. 즉, 채널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소위 PP(program provider)는 방송업에 포함되



고 케이블, 위성 등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산업은 통신업에 포함된 것이다.

〈표 3-4〉 2002 NAICS의 Information Sector(51) 분류

3-digit	4-digit
511 출판(인터넷 제외)	5111 Newspaper, Periodical, Book, and Directory Publishers
	5112 Software Publishers
512 영상 및 음반	5121 Motion Picture and Video Industries
	5122 Sound Recording Industries
515 방송업(인터넷 제외)	5151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5152 Cable and Other Subscription Programming
516 인터넷 출판 및 방송	5161 Internet Publishing and Broadcasting
	5171 Wired Telecommunications Carriers
517 통신업	5172 Wireless Telecommunications Carriers(except Satellite)
	5173 Telecommunications Resellers
	5174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5175 Cable and Other Program Distribution
	5179 Other Telecommunications
518 ISP, 웹검색포털, 데이터 처리	5181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Web Search Portals
	5182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519 기타 정보서비스	5191 Other Information Services

자료: U.S. Census

NAICS의 2007년 개정에서 정보산업군내 3자리 코드에서 가장 큰 변화는 NAICS 2002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구성한 인터넷 출판 및 방송을 웹검색포털과 묶어 기타 정보서비스내 하위분류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출판 및 방송이 전통적인 출판과 방송의 활동과는 다른 생산구조를 가진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나 웹 검색포털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NAICS 2007년 정보산업군내 세부 분류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업의 분류개정이다. 2007년 통신업내 세부 분류 체계는 케이블 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제공 서비스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는 최근의 융합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를

규제적인 구분에서 탈피하여 이용하는 네트워크의 형태에 따라 유선, 무선, 위성으로 구분하고, 재판매업 등을 포함한 나머지 서비스 관련 산업을 기타통신업으로 분류하였다(OMB, 2005). 먼저, 유선통신의 경우 직접 유선망을 소유하거나 망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전달되는 정보에 관계없이 유선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NAICS 2002에서 통신업내 독립적인 4자리 코드를 부여하였던 케이블 프로그램 전송 산업의 경우 독립적인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유선통신업에 포함시켰다. 즉, 세부 분류상에서 전통적인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다.

NAICS 2007은 새롭게 출현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고려도 있는데,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or VoIP)의 경우 망을 임대하거나 직접 소유하여 단독

〈표 3-5〉 2007 NAICS의 Information Sector(51) 분류

3-digit	4-digit
511 출판(인터넷 제외)	5111 Newspaper, Periodical, Book, and Directory Publishers
	5112 Software Publishers
512 영상 및 음반	5121 Motion Picture and Video Industries
	5122 Sound Recording Industries
515 방송업(인터넷 제외)	5151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5152 Cable and Other Subscription Programming
516 인터넷 출판 및 방송	5161 Internet Publishing and Broadcasting
	5171 Wired Telecommunications Carriers
517 통신업	5172 Wireless Telecommunications Carriers
	5174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5179 Other Telecommunications
	5182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518 데이터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5191 Other Information Services
	51911 News Syndicates
	51912 Libraries and Archives
	51913 Internet Publishing and Broadcasting and Web Search Portals
	51919 All Other Information Services

자료: U.S. Census

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유선통신에 분류하고, 제3자가 제공한 네트워크 접속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하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기타 통신업으로 분류하였다. 무선통신재판매(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무선통신망이나 주파수에 대한 면허권을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타 통신업내 통신재판매업으로 분류하였다.

## 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or ISIC)는 산업통계의 일관성 있는 국제비교를 위해 UN이 작성한 분류로서 각국의 산업분류 작성 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ISIC는 194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58년(ISIC Rev. 1), 1968년(ISIC Rev. 2), 1990년(ISIC Rev. 3), 2004년(ISIC Rev. 3.1) 각각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2008년에 제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제4차 개정된 국제표준산업분류내 방송통신산업 관련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ISIC Rev. 4는 NAICS의 정보산업군(Information Sector)과 유사하게 정보통신부문(Information & Communication Section)이라는 대분류를 신설하였다. 정보통신부문의 하위분류에는 출판, 영상 및 음반, 방송,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련 서비스, 정보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NAICS의 정보산업군과 비교하여 2자리 코드 분류에서의 차이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련 서비스(62)를 중분류로 정보통신부문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NAICS의 경우 동 산업을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군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출판 및 방송을 기존 출판업이나 방송업에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NAICS와의 차이점이다.

통신업과 방송업은 정보통신부문내 독립된 2자리 코드를 각각 부여하고 있는데 정보 혹은 콘텐츠의 제작을 동시에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신과 방송을 분리했다는 것은 NAICS 2007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ISIC에서도 케이블 및 기타 프로그램 전송산업은 통신업내 유선통신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방송업내 하위분

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유료 방송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통신업의 경우 NAICS 2007과 동일하게 이용되는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유선, 무선, 위성 등 3개 산업과 기타 통신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포함되는 세부 산업들도 NAICS 2007과 동일하다.

〈표 3-6〉 ISIC Rev. 4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ection J) 분류

2-digit	3-digit
58 출판업	581 Publishing of books, periodicals and other publishing activities
	582 Software publishing
59 영상 및 음반업	591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activities
	592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60 방송업	601 Radio broadcasting
	602 Television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61 통신업	611 Wired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12 Wireless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13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19 Other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문, 관련 서비스업	6201 Computer programming activities
	6202 Computer consultancy and computer facilities management activities
	6209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service activities
63 정보서비스업	631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web portals
	639 Other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자료: U.N.(2008)

### 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r KSIC)는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분류로서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ISIC Rev. 4)을 반영하여 2007년 12월 제9차 표준산업분류를 개정, 고시하였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출판업, 영상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

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을 하나로 묶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이라는 대분류를 신설하였다.

〈표 3-7〉 9차 KSIC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분류

2-digit	3-digit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1 통신업	611 우편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2008)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은 중분류 상에서 출판, 영상 및 오디오, 방송, 통신, 컴퓨터 서비스, 정보서비스로 구성하였다는 것은 국제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다. 하지만 세분류, 세세분류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내 방송업은 라디오 방송업과 텔레비전 방송업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텔레비전 방송업내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업(6022)이 프로그램 공급업뿐만 아니라 유선 방송업(60222)과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표준산업분류나 NAICS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산업(distribution of cable and other subscription programming), 즉 유선 방송업과 위성방송업을 유선통신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

시한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업의 정의를 보면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케이블 방송업과 위성방송업을 콘텐츠 제작과 송출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요 생산활동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이 아닌 송출이므로 국제표준산업분류와 NAICS에서처럼 이들 산업을 유선통신업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3-8〉 9차 KSIC의 방송업(60) 세분류 및 세세분류

3-digit	4-digit과 5-digit
601 라디오 방송업	6010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자료: 통계청(2008)

통신업에서는 먼저 통신업에 우편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경우 우편업은 운송 및 창고업에 분류되어 있으며, 생산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국제표준산업분류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기통신업의 경우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타 전기통신업내 분류인 통신 재판매업의 범위다. KSIC가 분류하고 있는 통신재판매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나 NAICS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재판매업의 범위보다 넓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별정통신사업과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KSIC는 통신재판매업(61291)을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의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ISIC나 NAICS의 경우 통신재판매업을 정보의 송수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단순재판매업만 포함하며 망을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각 관련된 통신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3-9〉 9차 KSIC의 통신업(61) 세분류 및 세세분류

3-digit	4-digit과 5-digit
611 우편업	6110 라디오 방송업
612 전기통신업	6121 유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6123 위성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1291 통신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자료: 통계청(2008)

이 외에도 KSIC의 경우 정보서비스업(63)내에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과는 구별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을 새로 신설하였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은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의 활동과 사실상 구별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인터넷 출판 및 방송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운로드 서비스와 같은 정보제공 서비스만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NAICS에서 인터넷 출판, 방송, 웹검색포털을 하나의 산업단위로 구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KSIC와 ISIC의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부문 비교

	9차 KSIC	ISIC Rev. 4	2007 NAICS
방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송출 산업(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송출 산업은 유선통신업으로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송출 산업은 유선통신업으로 분류</li> </ul>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업을 통신업에 포함</li> <li>기타 전기통신업내 통신재판매업이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업은 운송 및 창고업으로 분류</li> <li>통신재판매업은 정보의 송수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업만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업은 운송 및 창고업으로 분류</li> <li>통신재판매업은 정보의 송수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업만을 포함</li> </ul>

	9차 KSIC	ISIC Rev. 4	2007 NAICS
정보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출판 및 방송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음</li> <li>•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제공업을 1차 자료 가공 여부를 기준으로 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출판 및 방송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음</li> <li>•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따로 분리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출판 및 방송을 구분하여 웹검색포털과 함께 분류</li> <li>•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따로 분리하지 않음</li> </ul>

NAICS, ISIC, KSIC의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분류 변화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NAICS, ISIC, 그리고 KSIC에서 동일하게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송수신,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대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NAICS가 ISIC에 영향을 주고 있고 ISIC 변화가 모든 국가의 산업분류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공통점은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의 유형에 관계없이 콘텐츠의 제작과 전송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인 통신회사와 케이블방송사와의 생산활동 및 제공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ISIC와 KSIC의 web portal이나 NAICS의 인터넷 출판 및 방송 등의 신설은 인터넷 산업이 분류체계내 독립적인 산업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VoIP, Mobile Broadband 등의 신규서비스는 기존 유선, 무선, 위성 등 인프라 기반의 분류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에도 방송 및 통신 분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4. OECD의 ICT산업 및 미디어·콘텐츠 산업 분류

OECD는 현재 정보통신기술산업(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tor)과 콘텐츠·미디어(Content and Media sector)산업에 대한 분류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OECD의 ICT산업과 콘텐츠·미디어산업 분류는 독자적인 품목명과 체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국제표준산업분류의 세계분류 일부를 정보통신기술과 콘텐츠·미디어산업으로 정의한 것이다. 하지만, OECD는 정보경제산업(Information Economy



Industries)이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콘텐츠·미디어산업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OECD의 분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송통신부문의 범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OECD가 정보경제산업을 정보통신기술부문과 콘텐츠·미디어부문의 두 분류로 구분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산업(ICT)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먼저 설정하고 콘텐츠 부문 정의 및 분류를 추후 제시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컴퓨팅과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동일한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7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98년 정보통신기술산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 제시 먼저 제시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콘텐츠 산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였으나, 콘텐츠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2006년까지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분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OECD의 콘텐츠 및 미디어 부문 정의 및 분류체계의 설정은 NAICS에서 정보의 창작 및 전달이 주 생산활동인 출판, 영화, 음악, 방송, 통신, 정보처리 등의 산업들을 정보산업(Information Sector)으로 분류하고 이를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4차)에서 수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OECD의 콘텐츠 및 미디어 부문은 ISIC 정보통신부문에 포함된 산업들 중 OECD의 ICT산업 분류에 포함된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OECD의 ICT산업 분류를 살펴보면, ICT산업을 크게 ICT제조업, ICT유통업, ICT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ICT제조업은 컴퓨터, 통신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자부품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CT유통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 관련 유통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ICT서비스업의 경우 ISIC의 정보통신부문의 하위산업들 중 소프트웨어(5820), 통신(61),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련 서비스(62),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631)를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통신기기 수리업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한편, 방송의 경우 ICT산업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의 전송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이라는 두 개의 차별화된 활동을 수행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주된 산업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콘텐츠·미디어 산업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표 3-11〉 OECD ICT 산업 분류

구분	ISIC Rev.4		
ICT manufacturing	2610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boards	
	2620	Manufacture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2630	Manufacture of communication equipment	
	2640	Manufacture of consumer electronics	
	2680	Manufacture of magnetic and optical media	
ICT trade	4651	Wholesale of computers, computer peripheral equipment and software	
	4652	Wholesale of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parts	
ICT services	5820	Software publishing	
	61	Telecommunications	
	6110	6110	Wired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120	Wireless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130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190	Other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2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6201	6201	Computer programming activities
		6202	Computer consultancy and computer facilities management activities
		6209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service activities
	631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Web portals	
	6311	6311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6312	Web portals
	951	Repair of computers and communication equipment	
	9511	9511	Repair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9512		Repair of communication equipment	

자료: OECD(2009)

OECD의 콘텐츠·미디어 산업 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4차)의 정보통신부문의 하위산업들 중에서 ICT산업분류에 속한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즉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 592), 방송업(60), 기타 정보서비스업(639)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2〉 OECD Content·Media 산업 분류

Group	Class	ISIC Rev.4
581		Publishing of books, periodicals and other publishing activities
	5811	Book publishing
	5812	Publishing of directories and mailing lists
	5813	Publishing of newspapers, journals and periodicals
	5819	Other publishing activities
591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activities
	5911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activities
	5912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ost-production activities
	5913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distribution activities
	5914	Motion picture projection activities
592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60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601		Radio broadcasting
602		Television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639		Other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6391	News agency activities
	6399	Other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n.e.c.

자료: OECD(2009)

## 제 4 장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 개선방향

### 제 1 절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개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는 정보통신 산업협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정보통신산업 월보 및 연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분류체계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정보통신부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이다.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는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통계청이 작성한 표준산업분류체계보다 보다 세부적이다. 온라인 콘텐츠, 방송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OECD의 ICT산업보다는 범위가 넓고 정보경제산업(ICT산업과 콘텐츠·미디어 산업)보다는 범위가 좁다. 또한, 산업의 생산구조 혹은 소비자의 수요를 일괄적으로 반영한 분류라기보다 생산활동분류와 상품분류가 혼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상위분류는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에 해당 산업의 생산물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럽연합의 상품분류인 CPA (Classification of Products by Activity)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세부 품목은 총 69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분류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여 기간, 별정, 부가, 방송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정보통신기기는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는 패키지 S/W, 컴퓨터관련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KAIT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품목수
정보통신서비스		151
기간통신서비스	유선통신, 무선통신	72
별정통신서비스	설비보유재판매, 설비미보유재판매, 구내통신	15
부가통신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부가통신응용서비스, 콘텐츠제공서비스, 기타부가통신서비스	44
방송서비스	지상파방송서비스, 유선방송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프로그램제작공급, 기타방송서비스	20
정보통신기기		466
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152
정보기기	컴퓨터본체, 컴퓨터주변기기, 생체인식기, 지능형로봇 및 부분품, 정보기기부분품, 기타정보기기	79
방송기기	방송용기기, 디지털미디어기기, 방송기기부분품	87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범용부품, 기타부품	148
S/W및컴퓨터관련 서비스		77
패키지S/W	시스템S/W, 개발용S/W, 응용S/W	36
컴퓨터관련서비스	시스템통합서비스,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 정보보호 서비스, 기타컴퓨터관련서비스	22
DC개발서비스	정보용콘텐츠, 오락게임콘텐츠, 디지털출판물, 디지털 영상물, 기타콘텐츠	19
임베디드S/W	어플리케이션, 임베디드O/S, 기타	0
합계		694

자료: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제2절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 개선방향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안)은 기존 KAIT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역무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품목 중심으로 분류체계의 구조를 개선하였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분류체계를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그리고 방송

통신기기로 변경하였다.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안)은 신규 서비스를 반영하여 품목 분류체계로서의 특징을 살리는 동시에 학술적 목적, 정책적 목적 등 통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로 분리하였고,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유선통신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하여 품목 분류체계의 특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방송서비스는 지상파방송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프로그램 제작·공급, 기타 방송서비스로 구분하고 하위 항목을 구체화하였다. 정보통신기기는 방송통신기기로 변경하면서, 방송통신과 관계가 적은 정보기기 및 부품을 삭제하였다.

〈표 4-2〉 방송통신품목분류체계 개선 방향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000 정보통신서비스 1100 기간통신서비스 1200 별정통신서비스 1300 부가통신서비스 1400 방송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통신서비스</li> <li>○ 무선통신서비스</li> <li>○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li> <li>○ 부가통신서비스</li> </ul>
2000 정보통신기기 2100 통신기기 2200 정보기기 2300 방송기기 2400 부품	<input type="checkbox"/> 방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방송서비스</li> <li>○ 유료방송서비스</li> <li>○ 프로그램 제작·공급</li> <li>○ 기타 방송서비스</li> </ul>
3000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3100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 컴퓨터관련서비스 3300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3400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방송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기기</li> <li>○ 방송기기</li> </ul>

## 1. 통신서비스

현행 KAIT 분류는 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 관련법 체계를 반영하여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 분류체계(안)은 품목분류의 특성을 살려서 유선통신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회선설비 임대·채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하였다. 품목 분류를 통해 일반 및 학술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면서도 세부 항목에서는 분류간 연계를 유지하여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WiBro,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며, 기존에 일부만 반영되어 있던 기업간 거래를 반영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사업자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서비스를 신설하였다.

### 가. 유선통신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는 전화서비스, 통신서비스사업자(Carrier)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전신·전보서비스, 기타 유선통신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 1) 전화서비스

전화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도록 하는 시내·시외·국제 전화 등의 전기통신 서비스이다. 분류체계(안)은 전화서비스를 시내전화서비스,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지능망서비스, 인터넷전화(기간), 공중전화서비스, 기타유선전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시내전화서비스는 시내교환국(local exchange)에서 각 가입자에 이르는 가입자망(access network)과 시내교환국의 교환망 및 시내교환국 간의 전송망을 포함하는 중계망(trunk network)을 이용하여 가입자간 음성 등을 실시간 교환시켜주는 서비스이다(KISDI 2009<sup>10)</sup>,<sup>11)</sup>

10) 통신정책연구그룹(2009), “200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연구 09-6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2.

1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분류체계(안)은 시내전화서비스를 주거용과 기업용으로 분류<sup>12)</sup>하고, 접속료를 제외한 가입자접속서비스를 시내전화서비스 세부품목으로 포함시켰다. 시내전화서비스를 주거용과 기업용으로 분리하는 것은 양자가 이용 목적 및 양태가 달라 서로 다른 서비스로 인식하여야 하며, 주거용과 기업용 시장 규모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내전화를 주거용, 기업용, 공중용(공중전화)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중전화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독립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표 4-3〉 시내전화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1000 가입자접속서비스	□ 전화서비스
1111.1100 기본서비스	○ 시내전화서비스
1111.1200 장치서비스	○ 가입자접속서비스
1111.1300 가입서비스	○ 기본서비스
1111.2000 시내전화서비스	○ 장치서비스
1111.2100 시내통화	○ 가입서비스
1111.2110 일반통화	○ 시내전화서비스- 주거용
1111.2120 LM통화	○ 시내통화
1111.2200 부가서비스	○ 일반통화
1111.2210 CID	○ LM통화
1111.2220 기타	○ 시내전화서비스- 기업용
1111.2900 기타 시내전화	○ 시내통화
	○ 일반통화
	○ LM통화

시내전화 부가서비스는 시내전화망에 지능망 시스템을 추가하여 다양한 진화형

정의)는 시내전화서비스를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으로부터 시외전화 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12) KT 등 통신사업자에서도 전화서비스를 주거용과 기업용으로 분리하여 운용중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KISDI 2009).<sup>13)</sup>

분류체계(안)은 기존 시내전화서비스의 하부 품목인 부가서비스를 시내전화와 동등 계위로 상승시켰다. 전화서비스 이용자들의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여 시내전화 부가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유무선 대체로 인한 통화량 감소가 현실화되고, 단기적으로도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통신료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시내전화 부가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sup>14)</sup>

〈표 4-4〉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2000 시내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1111.2200 부가서비스	○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1111.2210 CID	○ 발신자표시(CID)
1111.2220 기타	○ 기타

시외전화서비스란 서로 다른 통화권간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시내전화와는 달리 가입자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통화권별로 시외교환기와 전송로만 구축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KISDI 2009).<sup>15)</sup> 이때 이용자가 시외전화

1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전화부가서비스를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14) 회계분리기준상에 전화부가서비스를 시내, 시외, 국제, 공중전화, 전화부가 서비스로 나누도록 되어있으나 사업자에 따라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분리하지 않고 있다(KISDI 2009).

1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시외전화서비스를 “시외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에서 국제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선택제를 활용하면 시외전화서비스에 이용할 시외전화 사업자를 시내전화 교환기에 등록하고, 별도의 사업자 식별번호 없이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분류체계(안)은 시외전화서비스 역시 시내전화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차별성 및 정책, 학술적 수요에 근거하여 주거용, 기업용으로 구분하였다.<sup>16)</sup>

〈표 4-5〉 시외전화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3000 시외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시외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시외전화서비스-주거용 <input type="checkbox"/> 시외전화서비스-기업용

국제전화서비스는 다른 국가간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통신망 계위별로는 관문국간의 교환시스템으로 국제교환기와 해저케이블(또는 위성)로 구성된다(KISDI 2009).<sup>17)</sup>

국제전화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유지하였다.

〈표 4-6〉 국제전화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4000 국제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국제전화서비스

16) 시외전화를 주거용, 기업용, 공중용(공중전화)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중전화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독립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17)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국제전화서비스를 “국제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이후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지능망서비스는 기존 전화망에 지능망 시스템을 추가하여 다양한 진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KISDI 2009).<sup>18)</sup>

분류체계(안)에서는 지능망서비스를 무료전화(080), 전국대표번호(1588 등), 평생번호(0502,0505,0506), 콜렉트콜(1541,1595), 전화투표(1580) 등 품목 위주로 분류하였고, 기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구분 폐지하였다.

〈표 4-7〉 지능망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6000 지능망서비스 1111.6100 시내전화 1111.6200 시외전화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능망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무료전화 <input type="checkbox"/> 전국대표번호 <input type="checkbox"/> 평생번호 <input type="checkbox"/> 콜렉트콜 <input type="checkbox"/> 전화투표 등 전화서베이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KISDI 2009).<sup>19)</sup>

현재 인터넷전화는 유선통신서비스(1)와 별정통신서비스(2)에 총 세 개의 분류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다. 분류체계(안)에서는 이들을 유선통신서비스 하위 품목으로

1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전화부가서비스를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터넷전화가 기간역무화 하면서 품질 향상이 있었으며, 070 식별번호 부여 정책으로 인해 기간통신과 별정통신간 품질이 균등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지에 따라 서비스 차별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한편 인터넷전화사업자가 국제교환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별정 1호와 별정 2호를 구분하는데, 이 또한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인터넷전화(별정1)와 인터넷전화(별정2)로 구분하는 요소로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자 간 서비스 차이도 없다.

하지만 분류체계(안)에서는 인터넷전화를 인터넷전화(기간)과 인터넷전화(별정1호, 2호)로 구분하였다. 통상 재판매의 경우 원 품목과의 차별성이 없어 재판매를 품목분류의 별도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학술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역무에 따른 구분을 가미하였다.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기간과 별정의 구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분류체계(안)에서는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양자를 구분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전화 별정 1호와 별정 2호간 차이는 실질적인 구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터넷전화(별정1호, 2호)로 통합하였다.

통계 수요 및 전문가 의견에 의해 인터넷전화의 하위분류로 IP폰과 스마트폰의 세부항목을 신설하였다.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IP폰 서비스와 소프트 폰 서비스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때 스마트폰은 인터넷전화사업자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인터넷전화를 말한다. 기존 PSTN 기반의 전화가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가 있는 것과 달리 소프트웨어와 헤드셋만을 이용하여 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불린다(KISDI 2009).

그리고 인터넷전화는 유선통신서비스 하위 품목으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 등과 동등 계위로 분류하였다. 인터넷전화는 전화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과 차별적인 가격체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동등 계위로 분류하였다.

〈표 4-8〉 전화서비스 가격체계

	시내/시외 1대역	시외2, 3대역	LM(이동전화)
시내/시외전화	39원/3분	250~261원/3분	14.5원/10초
인터넷전화	38~39원/3분	36~39원/3분	11.7~13원/10초

자료: 각사 웹사이트

〈표 4-9〉 인터넷전화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9000 인터넷전화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전화(기간) <input type="checkbox"/> IP폰 <input type="checkbox"/> 소프트폰

공중전화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용 단말기기를 설치하여 공중용으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sup>20)</sup>

공중전화서비스를 시내전화, 시외전화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4-10〉 공중전화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7000 공중전화서비스 1111.7100 일반통화 1111.7200 LM통화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공중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일반통화 <input type="checkbox"/> LM통화

2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공중전화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용 단말기기와 동단말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전화서비스 하위 항목으로 기타 유선전화서비스로 통합디지털서비스네트워크(ISDN), 구내통신, 기타전화서비스를 분류하였다.

통합디지털서비스네트워크(ISDN)는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문자·영상 등을 통합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즉 전화통화와 동시에 데이터통신 등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ISDN은 초창기 인터넷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나, 지금은 인터넷접속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접속 요금이 비싸 기업용 전화서비스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ISDN은 기술적 분류로서 서비스 품목 분류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ISDN을 인터넷접속서비스나 전화서비스 등의 서비스 품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하지만 ISDN을 통해서 전화통화와 데이터통신 등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서비스나 인터넷접속 서비스로 단독 분류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ISDN을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분류체계(안)에 ISDN이 실질적으로는 기업용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ISDN을 기업용 전화서비스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구내통신서비스는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sup>21)</sup>

구내통신서비스는 현재 별정통신서비스에 분류되어 있다. 구내통신이 별정으로 분리된 이유는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간으로 분류해야하나 기간의 요건이 엄격하여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그래서 분류체계(안)에서는 구내통신서비스를 유선통신서비스 아래 기타유선통신서비스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신사업자도 구내통신을 기업용 전화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설비를 임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설비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서

2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구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스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목분류체계에서 별정통신의 항목으로 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이 개념상 적절하지 않다.

〈표 4-11〉 기타 유선전화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8000 통합디지털서비스네트워크(ISDN) 1230.0000 구내통신 1111.2900 기타 시내전화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선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통합디지털서비스네트워크(ISDN) <input type="checkbox"/> 구내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전화서비스

## 2) 통신서비스사업자(Carrier)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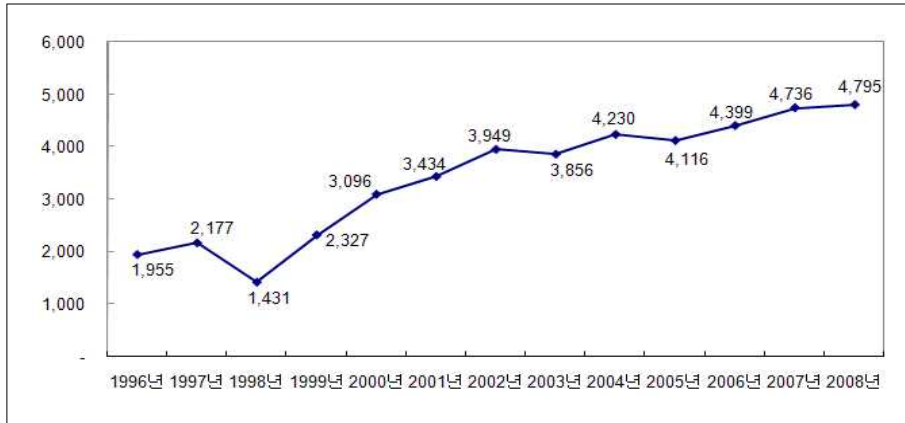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통신서비스사업자간 거래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분류체계(안)에 통신서비스사업자(Carrier)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 서비스<sup>22)</sup>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가입자선로접속서비스’에서는 LL접속료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분류체계(안)에서는 상호접속회선료, 유선망접속료, 무선망접속료로 세분화하였고, 인터넷백본서비스를 신설하였다. 접속제공사업자들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동전화사업자, 시내,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자의 추가 진입에 따른 접속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KISDI 2009). 이처럼 통신서비스사업자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신규 통신서비스사업자의 진입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유무선 통합서비스, 데이터 통신의 활성화와 같은 신규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부문으로 볼 수 있다.

2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를 “ISP간 인터넷호의 교환이나, 타 ISP의 호를 제 3 ISP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4-1] 접속제공 사업자의 접속료 수입 추이

(단위: 억원)



자료: KISDI 2009

그리고 신설한 통신서비스사업자(Carrier)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 서비스를 전화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전신·전보서비스, 기타유선통신서비스와 동일한 계위로 분류하였다.

<표 4-12> 통신서비스사업자(Carrier)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0.0000 유선통신서비스 1111.0000 전화서비스 1111.1000 가입자접속서비스 1111.1400 가입자선로접속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통신서비스사업자(Carrier)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접속회선료(장비설치료)</li> <li>○ 유선망접속료</li> <li>○ 접속료 LL</li> <li>○ 접속료 ML</li> <li>○ 무선망접속료</li> <li>○ 접속료 LM</li> <li>○ 접속료 MM</li> <li>○ 인터넷 백본 서비스</li> <li>○ 상호접속회선료</li> <li>○ 접속료</li> </ul>



### 3) 전용회선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는 일반 공중전기통신회선과 달리 특정 지점 간을 배타적으로 연결하여 특정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sup>23)</sup> 주로 정부기관, 기업체 등의 데이터·팩스·사내방송·사내통합망, 금융기관 온라인망,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통신망 구축 등에 이용되고 있다(KISDI 2009).

분류체계(안)은 전용회선 서비스를 시내/외, 국제, 방송 전용회선 서비스로 세분화하였다.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IP-VPN으로 대체되고, 요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은 전용회선을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으나, 시내/시외 구분이 약화되는 추세이며, 방송 전용회선서비스의 구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분류체계(안)에서는 시내/외, 국제, 방송 전용회선 서비스로 세분화하였다.

〈표 4-13〉 전용회선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2.0000 전용회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용회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시내/외 전용회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국제 전용회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송 전용회선서비스

2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가.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통화권내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나.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통화권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라.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방송용등 특수한 용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와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가 아니라 전송역무에 규정하고 있다.

## 4) 초고속망 서비스

현재 초고속망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인터넷접속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정부가 투자하여 일반국민에게 정부 공공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고속국가망서비스’, 그리고 ‘기타 초고속통신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인터넷 가입자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백본망에 접속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KISDI 2009).<sup>24)</sup>

현행 분류체계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케이블모뎀, xDSL, 위성, 아파트랜, 무선랜, Wibro, 기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이때 이들 분류는 기술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이를 서로 다른 서비스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품목분류체계에서 기술방식별 서비스를 서로 다른 서비스로 인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케이블모뎀, xDSL, 아파트랜의 경우 기술방식에 따라 요금체계 및 품질의 차이는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기술방식에 대한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최저보장속도<sup>25)</sup>를 보장하고 있고, 사업자별로 다수의 기술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대체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여 서로 다른 서비스로 보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분류체계(안)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수요에 따라 기술적 방식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하위 품목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월 발표하는 품목인 xDSL, HFC, LAN, FTTH, 위성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선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 중 WiBro와 무선랜서비스의 경우 유무선통합서비스 및 이동성이 강한 WiBro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선통신서비스

2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 유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리고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25) 2002년 8월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다운로드 최저보장속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분류로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신설하고 여기에 분류하였다.

인터넷접속서비스에는 dial-up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항목 신설 논의가 있었는데, 저속의 dial-up 방식의 매출이 미미한 점을 고려시 별도 분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다.<sup>26)</sup>

초고속국가망서비스는 공공기관, 연구소, 학교 등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하에 공공재원으로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한국전산원, 2006). 그리고 기타 초고속통신서비스의 경우 신규 서비스인 IPTV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는데, IPTV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서비스에 IPTV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였다. 분류체계(안)에서는 초고속국가망서비스과 기타 초고속통신서비스를 현행 분류 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표 4-14〉 초고속망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3.0000 초고속망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초고속망 서비스
1113.100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1113.1100 케이블모뎀 서비스	○ xDSL
1113.1200 xDSL서비스	○ HFC
1113.1300 위성	○ LAN
1113.1400 아파트랜	○ FTTH
1113.1500 무선랜	○ 위성
1113.1600 WiBro	○ 기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1113.1900 기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초고속국가망서비스
1113.2000 초고속국가망서비스	○ 기타 초고속통신서비스
1113.9000 기타 초고속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여 구축한 데이터망을 단순 분할, 임차하거나 단순전송 또는 통신규약을 변경하는 전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6) 인터넷접속서비스에는 dial-up 방식과 always-on 방식이 있다.

이다(KAIT 2007).<sup>27)</sup>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으나,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전송역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종전에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었던 프레임릴레이·ATM 등 데이터전송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새로 편입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분류체계(안)에서도 네트워크서비스를 기존 부가통신서비스에서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선통신서비스로 이동하였다.<sup>28)</sup>

〈표 4-15〉 네트워크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310.0000 네트워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네트워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네트워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VPN <input type="checkbox"/> ATM <input type="checkbox"/> Frame relay <input type="checkbox"/> 기타 네트워크서비스

그 외 전신·전보서비스와 기타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였다.

〈표 4-16〉 전신·전보서비스, 기타 유선통신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4.0000 전신·전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신·전보서비스
1119.0000 기타 유선통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선통신서비스

27)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7), “정보통신산업 분류체계 품목해설서”

28) 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07. 12. 14)에 따르면 “이에 따라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나. 무선통신서비스

무선통신은 통신 케이블을 사용하는 유선통신과는 달리 공간을 전송매체로 하여 송신측에서 정보신호를 전파에 실어 공간에 방사하고, 수신측에서는 공간을 거쳐 전송되어온 전자파를 수신하여 원래의 신호로 복원하는 방식의 통신서비스를 지칭한다. 이동통신을 서비스에 따라 분류하면, ① 육상 이동통신: 이동전화(Mobile Phone), 무선전화(CT: Cordless Telephone), 무선데이터,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ystem), 무전기, ② 해상 이동통신: 선박전화, 항만무선전화, ③ 항공 이동통신: 항공무선전화, 공항무선전화로 구분된다(KISDI 2009).<sup>29)</sup>

한편 분류체계 (안)에서는 무선통신서비스를 이동통신서비스,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무선통합서비스(FMC),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폭출 및 메시징 서비스,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로 분류하였다.

#### 1)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동전화서비스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단말기를 휴대하고, 단말기와 고정된 지점간 또는 단말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화서비스이다(KISDI 2009).<sup>30)</sup>

이동전화서비스는 기존(셀룰러+PCS), 3G 기술적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술 방식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위분류로 음성통신, 데이터통신이라는 서비스 관점으로 분류하였다.<sup>31)</sup> 시장 수요를 반영

29) KISDI 2009에서는 무선통신 대신 이동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를 “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이동통신(IMT2000)서비스를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31) 3G 사업권이 없는 LG텔레콤이 기존 2G 주파수 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EV-DO Rev.A는 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3G로 분류 가능하다(KISDI 2009).

하고 있는 품목분류 관점에서 기술 중심 분류를 탈피하고자 하였으나,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기술 방식에 따라 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술 방식에 따른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분류명은 기존 기술방식을 탈피해 이동전화서비스로 즉,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향후 4G 등 신 기술이 도입되면, 이에 따른 음성, 데이터통신 분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하위분류로 가입비 항목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데이터통신 부문에 WAP/ME에 대응하는 인터넷직접접속 항목을 신설하였다. 향후 스마트폰 등을 통한 데이터 통신이 활성화되는 경우 형식적 제한이 있는 WAP/ME 방식과 데이터직접접속 방식의 수요 측면에서의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WAP/ME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향후 스마트폰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존 피쳐폰 형태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동전화서비스도 개인용과 기업용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서비스의 차별성, 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이번 분류체계(안)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 내에 M2M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기업 M2M 서비스를 기타 데이터통신에 포함할 것인가 검토하였으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한 기업 M2M 서비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역시 이 부문의 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신설하였다. 한편 아래에서 언급할 무선데이터통신(013)에도 M2M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한편 통신사업자는 M2M서비스를 기업용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는 이동전화를 이용해 음성과 데이터 통신 등 기본 서비스 이외에 제공하는 각종 부가적 서비스를 말한다.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이동전화와 동등 계위로 이동시켰다.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의 하위 품목으로 위치착신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등이 있는데, 매출 등 중요성 관점에서 주요 부가서비스와 기타로 구분하였다.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의 분류가 비교적 단순한 이유 중 하나는 세부사항의 주요성이 미비하고, 세부 항목에 대한 외부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향후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슈, 부가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적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 항목 구체화 작업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7〉 이동통신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20.0000 무선통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동통신서비스
1121.0000 이동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2G
1121.1000 이동전화서비스	○ 음성통신
1121.1100 셀룰러+PCS	○ MM 서비스
1121.1110 음성통신	○ ML 서비스
1121.1111 MM서비스	○ 데이터통신
1121.1112 ML서비스	○ SMS
1121.1120 데이터통신	○ WAP/ME
1121.1121 SMS	○ 인터넷 직접접속
1121.1122 WAP/ME	○ M2M서비스
1121.1129 기타 데이터통신	○ 기타 데이터통신
1121.1130 부가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3G
	○ 음성통신
	○ MM 서비스
	○ ML 서비스
	○ 데이터통신
	○ SMS
	○ WAP/ME
	○ 인터넷 직접접속
	○ M2M서비스
	○ 기타 데이터통신
	○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 위치착신서비스
	○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 기타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에서 무선랜, WiBro<sup>32)</sup> 등의 무선데이터통신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sup>33)</sup>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는 WiBro, 무선랜 그리고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LL)가 있다. 현재 WiBro와 무선랜은 초고속망서비스에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이동하였다. WiBro는 데이터 지향적 서비스의 특성이 보다 강하다고 판단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으나, 식별번호를 부여받아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이 강해졌다는 점과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유선을 통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지칭하는 반면, WiBro는 무선통신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무선랜 역시 무선랜 서비스 혹은 Wi-Fi 서비스로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향후에는 WiBro의 경우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향후 4G 도입시 LTE는 이동통신으로 분류하고, WiBro는 유선통신으로 분류하게 되는 문제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류체계 (안)에서는 최근의 유무선통합 추세를 반영하여 유무선통합서비스(FMC)를 신설하였다. 유무선통합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유선통신서비스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무선통신서비스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동등 계위의 별도 항목을 만들

3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와이브로를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33) KISDI(2009)는 무선인터넷을 이동전화, 노트북PC, PDA 등의 무선단말기와 이동통신망 또는 무선LAN, WiBro 등의 무선데이터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모바일인터넷: 이동전화(휴대폰, 스마트폰, PDA폰 등)로 이동통신 망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
- 무선LAN: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안(핫존)에서 노트북PC, 스마트폰/PDA폰, PDA 등의 무선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
- 초고속무선인터넷: 3세대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인 HSDPA 및 WiBro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



어야 하는가가 문제되었다. 하지만 현재 유무선통합서비스는 주로 무선단말기를 통해 이동통신망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무선랜(혹은 WiBro)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모바일 VoIP, 가정 및 사무실 VoIP를 이용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과 서비스 진화 방향에서 유선통신 보다는 무선통신 분야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서비스 내에 유무선통합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유무선통합서비스를 유선, 무선과 같은 계위로 별도 분류하거나, 무선통신서비스 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와 같은 계위에서 분류하고 있다.

〈표 4-18〉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3.1500 무선랜 1113.1600 WiBro 1122.0000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LL)	<input type="checkbox"/>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input type="checkbox"/> WiBro(휴대인터넷) <input type="checkbox"/> 무선랜 <input type="checkbox"/>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LL)

그리고 유무선통합서비스의 경우 개인용과 기업용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분류하지 않은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4-19〉 유무선통합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유무선통합서비스(FMC) <input type="checkbox"/> 유무선통합서비스(FMC)-개인용 <input type="checkbox"/> 유무선통합서비스(FMC)-기업용

주파수공용통신(TRS)은 1978년에 미국에서 처음 채택한 통신서비스 방식으로, 무선 증계국에 할당된 일정한 주파수를 독립된 각각의 채널을 하나로 묶어 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도록 한 방식이다(KISDI 2009).<sup>34)</sup> 일정한 주파수를 전용하는 이동전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주파수공용통신(TRS)은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였다.

〈표 4-20〉 주파수공용통신(TRS)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21.2000 주파수공용통신(TRS)	<input type="checkbox"/>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은 무선 모뎀 또는 무선 모뎀이 장착된 전용 단말기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양방향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무선데이터 전용 서비스를 말한다(KAIT 2007).<sup>34)</sup> 분류체계(안)은 무선데이터통신을 세분화하여 하위분류로 SMS와 M2M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향후에는 무선데이터통신을 통한 M2M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가로등 제어, 전기, 가스 사용량 등의 원격검침, 무인경비, 무선데이터통신망을 통해 GPS가 부착된 단말기로 물류 서비스, 버스안내 서비스 등이 활성화된 것을 반영하여 M2M서비스 분류를 원격제어·검침, 교통정보서비스, 물류지원서비스, 모바일결제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M2M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분류가 다르며, 주파수 및 망, 단말기가 이동전화와는 차별적이므로 별도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무선데이터통신을 이용한 주식거래, 모바일배팅(경마), 모바일커머스, 문자서비스(청각장애인), 정보서비

3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를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3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스(날씨, 뉴스 등) 등이 있다.

〈표 4-21〉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21.3000 무선데이터통신	<input type="checkbox"/> 무선데이터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S</li> <li>○ M2M서비스</li> <li>○ 원격제어,검침</li> <li>○ 교통정보서비스</li> <li>○ 물류지원서비스</li> <li>○ 모바일결제</li> <li>○ 기타</li> </ul>

무선호출 및 메시징 서비스는 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여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숫자, 문자 등의 정보를 전송해주는 단방향 무선호출망 및 e-mail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단말기에서도 전송할 수 있는 양방향 무선호출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KAIT 2007).<sup>36)</sup>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무선호출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메시징 서비스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무선호출 및 메시징 서비스로 분류명을 변경하고, 하위분류로 무선호출 서비스와 메시징 서비스를 신설하여 실시간 정보제공메시징서비스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실시간 정보제공 메시징 서비스로 교통정보(속도, 사고, 통제, 공사, 백화점 세일, 고속도로 정보 등), 뉴스, 날씨 정보 제공서비스 등이 있다.<sup>37)</sup>

3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무선호출서비스를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37) 실시간 정보제공서비스 예: 리얼텔레콤은 리얼트래픽이라는 상품명으로 무선호출망을 이용해 교통정보를 제공 중이다.

〈표 4-22〉 무선호출 및 메시징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21.4000 무선호출	<input type="checkbox"/> 무선호출 및 메시징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무선호출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메시징 서비스

그 외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에는 공항무선통신(지대공, 지대지서비스), 선박무선통신,<sup>38)</sup> 이동공중전화, 해상이동통신,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가 있다. 이들 세부 분류를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에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중요성 측면에서 기존 분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 4-23〉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21.9000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는 우주국, 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기타의 물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무선통신 서비스이다(KAIT 2007).<sup>39)</sup> 위성통신서비스의 경우 기존 분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3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선박무선통신서비스를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3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는 위성통신서비스를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위성휴대통신서비스를 “저궤도위성 또는 중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표 4-24〉 위성통신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23.0000 위성통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위성통신서비스
1123.1000 국내위성통신서비스	○ 국내위성통신서비스
1123.2000 국제위성통신서비스	○ 국제위성통신서비스
1123.3000 GMPCS서비스	○ GMPCS서비스
1123.9000 기타 위성통신서비스	○ 기타 위성통신서비스

#### 다.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현행 분류체계는 별정통신서비스에 설비보유재판매와 설비미보유재판매 그리고 국내통신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다. 이는 별정통신사업자 분류체계에 기반한 분류로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만, 품목분류체계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즉 설비를 임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설비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목분류체계에서 별정통신의 항목으로 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이 개념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기존 분류체계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기간, 별정통신사업자 분류는 설비보유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설비보유 유무 및 보유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대기업이고, 별정통신사업자는 중소기업이라는 구분 근거도 약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술발전으로 교환설비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자본금 수준에 따른 별정 1호, 2호의 구분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분류체계(안)은 별정통신서비스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의 서비스로 환원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즉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유선 혹은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서비스를 유선 혹은 무선통신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검토하였다. 품목 분류체계의 개념상 일부 재판매 서비스의 경우 원 해당 서비스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지만, 산업적 특성이 상이하 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분석 및 규제를 위해 별정통신서비스의 수요가 있고, 세부

서비스를 검토한 결과 요금체계 및 품질에 있어서 일정부분 별도의 서비스로 인식할 만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류는 유지하되, 분류 명을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세부 항목에서 구내통신 서비스는 유선통신서비스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의 하위분류로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를 두었다.<sup>40)</sup>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서비스는 유선통신재판매와 무선통신재판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유선통신재판매는 유선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국제회선재판매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무선통신재판매서비스는 음성과 데이터로 구분하여,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VNO<sup>41)</sup> 서비스를 반영하고자 하였다.<sup>42)</sup>

40) 재판매의 경우 원 서비스의 분류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산업적 특성이 다르고, 정책규제 목적상 별도 재판매 분류 하에 분류할 실익이 존재. 또한 재판매 서비스는 원 서비스와 산업활동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는 리스크나 가격체계가 원 서비스와 상이하여 별도의 서비스로 인식 가능하다.

○ 설비보유재판매의 일반적 특성

－ 음성재판매의 경우 도매 혹은 임대한 회선 혹은 설비에 대해 별정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 서비스제공업체의 가격체계와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

○ 설비미보유재판매의 일반적 특성

－ 설비미보유재판매의 경우 원 서비스의 브랜드를 그대로 이용하고, 가입자를 모집,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사업자용 다량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서비스

41)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일반적으로 주파수와 무선국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망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브랜드와 요금체계를 갖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변정욱 외 2007). 하지만 MVNO도 MNO의 무선통신설비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42) 이동통신사들은 음성 MVNO에는 소극적이지만, 데이터 MVNO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10년 상반기 데이터 중심의 MVNO 사업자가 등장할 예정이다.(모바일 콘텐츠업체인 엔타즈는 KT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미니게임 포털을 운영할 예정), 온라인 서점 인터파크INT는 LG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이

인터넷전화(별정1, 2호)는 앞의 유선통신서비스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가격과 품질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유선통신서비스로 이동을 검토하였으나 정책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간과 별정을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인터넷전화(별정1, 2호)는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에 두되, 별정 1호와 2호를 통합하여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서비스에 분류하였다.

통신서비스모집, 중개서비스도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나누고 각각 재과금서비스와 호집중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기존 KAIT의 무선재판매 항목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서 호집중, 재과금서비스의 일종이므로 기존의(단순) 무선재판매는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의 호집중, 재과금서비스로 재분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MVNO 서비스는 단순 무선재판매의 경우 통신서비스모집, 중개서비스에 분류되고, 독립적인 브랜드와 요금체계를 갖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로 분류된다. 즉 MVNO의 경우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에 해당하나, 가장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단순) 무선재판매의 경우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무선통신으로 분류되는 것이다.<sup>43)</sup>

한편 국제전화 요금 인하로 인해 서비스 활용도가 저하되어 사업체가 급감한 국제콜백전화 분류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구내통신서비스는 기타 유선전화서비스로 이동하였다. 구내통신이 별정으로 분리된 이유는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간으로 해야 하나 기간의 요건이 엄격하여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고, 구내통신서비스가 재판매 서비스도 아니고, 모집, 중개서비스도 아니기 때문에 유선통신서비스로 분류를 이동하였다. 한편 선불카드의 경우 재과금, 호집중 서비스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

용하여 전자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일보, 2009. 11. 16).

43) 기존 무선재판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KT의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요금 체계도 동일한 단순 무선재판매에 해당하였다.

〈표 4-25〉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200.0000 별정통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1210.0000 설비보유재판매	○ 유선통신재판매
1211.0000 음성재판매	○ 유선전화
1212.0000 인터넷전화	○ 시외전화
1213.0000 국제콜백전화	○ 국제전화
1214.0000 국제회선재판매	○ 인터넷전화
1215.0000 초고속접속서비스	○ 인터넷접속서비스
1219.0000 기타	○ 국제회선재판매
1220.0000 설비미보유재판매	○ 무선통신재판매
1221.0000 재과금서비스	○ 음성
1222.0000 호집중서비스	○ 데이터
1223.0000 인터넷전화	<input type="checkbox"/>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1224.0000 무선재판매	○ 유선통신
1225.0000 초고속접속서비스	○ 재과금서비스
1230.0000 구내통신	○ 호집중서비스
	○ 무선통신
	○ 재과금서비스
	○ 호집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라. 부가통신서비스<sup>44)</sup>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 정의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통신 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전송, 매체변환,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로서, WTO 기본통신협정 통신부속서 상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자가 설비 보유 없이 다른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임대해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되, 통신네트워크상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일정기간 축적 또는 가공한 후 전송하는 특성을 지니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나성현 외 2008).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설비를 빌려 전화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전용회선서

44) 부가통신서비스 부분은 나성현 외(200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이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이다.<sup>45)</sup>

현행 부가통신서비스의 사업유형 분류는 2001년에 수립되었으며, 기반사업, 활용사업, 지원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때 기반사업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여 데이터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사업자를 위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음), 활용사업은 인터넷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포탈, 콘텐츠 제공,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활용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웹호스팅, IDC, ASP)을 말한다.

현행 부가통신서비스 분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당국의 역무 통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통신·방송정책 및 법률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송역무 통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 분류체계는 정책 및 법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해당 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부가통신서비스에 잔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 부가통신사업이었던 VPN, ATM, Frame Relay 등 네트워크 서비스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전송역무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분류체계(안)에서는 네트워크서비스를 유선통신서비스로 이동하였다. 둘째 현재 부가통신서비스 분류체계는 P2P, 웹하드, UCC 등 신규 서비스를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분류항목을 신설 혹은 확장하여 기존 분류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품목들을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초고속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시장의 성격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은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확산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P2P, 웹하드, UCC 등 신규 서

---

4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④는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다.

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콘텐츠를 공급하는 CP나 포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들의 사회적 파급력 및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류체계(안)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의 계층형 분류에서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부문만을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하고 시장 구조형 분류체제로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분류체계(안)은 현행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부가통신응용서비스, 콘텐츠제공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인터넷 관리 및 지원서비스,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 서비스, 콘텐츠 제공 및 포털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류체계(안)은 기존 부가통신서비스의 네트워크서비스는 유선통신서비스로 이동하였다.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부가통신사업(VPN, ATM, Frame Relay, 패킷교환, 회선교환, 화상회의 등)이 기간통신역무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유예기간을 거쳐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sup>46)</sup> 유선통신서비스로 이동시킨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개념상 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선통신서비스에 해당하며 기간통신 서비스화 되었다는 점, 제공 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이더라도 해당 서비스는 유선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다.

우선 인터넷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인터넷관리서비스와 인터넷지원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관리 서비스에서 홈페이지제작서비스 등을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서비스로 보완하고, 인터넷지원서비스에서 CDN 등을 반영하여 콘텐츠 전송 지원서비스를 신설하였다.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 서비스에서 부가통신응용서비스와 인터넷 중개 및 온라인상거래서비스를 구분하였다. 이때 인터넷 중개 및 온라인상거래서비스에서 정보중

46) 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07. 12. 14)에 따르면 “이에 따라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서비스(거래 및 정보 중개 서비스 등), 온라인 스토리지 공유 서비스(웹하드, 및 웹하드 공유서비스 등),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P2P 등)를 신설하였다.

〈표 4-26〉 인터넷 관리 및 지원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300.0000 부가통신서비스	
1310.0000 네트워크서비스	□ 인터넷 관리 및 지원 서비스
1320.0000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 인터넷 관리 서비스
1321.0000 인터넷접속기반 서비스	○ 호스팅 서비스
1322.0000 호스팅 및 관리 서비스	○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 서비스
1322.1000 호스팅서비스(웹, 서버, 스토리지)	○ 보안 관리 서비스
1322.2000 Co-location	○ 도메인 관리 서비스
1322.3000 보안관리 서비스	○ 인터넷 지원 서비스
1322.4000 도메인관리 서비스	○ Co-location 서비스
1322.5000 홈페이지제작 서비스	○ 콘텐츠 전송 지원 서비스
1322.9000 기타	

한편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상품판매서비스 차별화 여부와 이용자가 직접 접근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서버 혹은 자체 인터넷 사이트의 보유 및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타인의 상품 거래 행위를 제공하는 경우와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판매서비스가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차별화되어 웹사이트 상에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에 포함시킨다(나성현 외 2008).

콘텐츠 제공 및 포털 서비스는 음성 콘텐츠 제공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인터넷 검색 포털 서비스, 인터넷 광고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우선 현행 전화서비스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번호안내서비스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음성 콘텐츠 제공 서비스로 이동하였다. 번호안내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간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 내용상

번호안내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27〉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330.0000 부가통신응용서비스	□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 서비스
1331.0000 고도팩스서비스	○ 부가통신 응용 서비스
1332.0000 신용카드검색(CCIS)서비스	○ 고도팩스 서비스
1333.0000 컴퓨터예약(CRS)서비스	○ 신용카드 검색(CCIS) 서비스
1334.0000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	○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1335.0000 원격통신서비스	○ 원격통신 서비스
1336.0000 전자지불서비스	○ 전자지불 서비스
1337.0000 온라인정보처리	○ 온라인 정보처리 서비스
1338.0000 인터넷전자상거래(수수료)	○ 인터넷중개 및 온라인상거래 서비스
1339.0000 기타 부가통신응용 서비스	○ 정보중개 서비스
	○ 온라인 예약 서비스
	○ 전자상거래 서비스
	○ 온라인 스토리지 공유 서비스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들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포털 서비스와 신규서비스의 시장 현황 및 규모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때 포털서비스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지원하는 포털서비스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해외에서도 포털서비스는 인터넷 검색을 지원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web search portal). 이때 인터넷신문(조선닷컴, 인터넷 한겨레), 특정 주제를 다루는 커뮤니티 사이트(디씨인사이드, PGR21 등) 등은 포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털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콘텐츠 제공서비스와 중복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서비스가 포털이 아닌 제3의 사업자에게서 제공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포털에서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표 4-28〉 콘텐츠 제공 및 포털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340.0000 콘텐츠제공서비스	
1341.0000 콘텐츠제공서비스(전화수수료)	
1342.0000 콘텐츠제공서비스(인터넷·모바일)	
1342.1000 인터넷 방송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제공 및 포털 서비스
1342.2000 인터넷 게임	○ 음성 콘텐츠 제공 서비스
1342.3000 온라인 교육(e-러닝)	○ 음성 콘텐츠 제공 서비스
1342.4000 정보제공	○ 번호안내서비스
1342.4100 금융/경제	○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1342.4200 가정/생활	○ 웹캐스팅 서비스
1342.4300 엔터테인먼트	○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1342.4400 의료/법률	○ 인터넷 게임 서비스
1342.4900 기타	○ 인터넷 교육 서비스
1342.5000 디지털 미디어	○ 전문정보 제공 서비스
1342.5100 디지털영상	○ 디지털 영상 제공 서비스
1342.5200 디지털음악	○ 디지털 음향 제공 서비스
1342.5210 벨소리	○ 디지털 출판물 제공 서비스
1342.5220 통화대기음	○ 인터넷 검색 포털 서비스
1342.5290 기타	○ 인터넷 광고 서비스
1342.6000 디지털출판물(e-book, 만화 등)	○ 인터넷 광고 서비스
1342.7000 인터넷광고(배너, 검색광고)	
1342.9000 기타	
1349.0000 기타 콘텐츠서비스	
1111.5000 번호안내서비스	

그 외 기타 부가통신서비스는 기존 분류를 유지한다.

〈표 4-29〉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390.0000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 2. 방송서비스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방송서비스를 지상파방송서비스, 유선방송서비스, 프로그램 제작·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IPTV 등 신규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부 분류가 자세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분류체계(안)은 방송서비스를 신규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유형화함과 동시에 세부 분류체계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분류체계(안)은 방송서비스를 지상파방송서비스와 유료방송 서비스, 프로그램 제작·공급 그리고 기타방송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서비스 형태를 고려하여 텔레비전 서비스와 라디오 서비스로 구분하는 방법도 제기되었지만,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분류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방송산업은 수직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방송산업 품목은 소비자의 수요와 기업의 수요를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신료, 시설설치, 컨버터 대여 등은 소비자의 수요이고, 프로그램 판매, 방송수신료(채널판매) 등은 기업의 수요이다. 분류체계(안)은 이 둘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 가. 지상파방송서비스

지상파방송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서비스는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지상의 무선국을 통해 영상 또는 음성, 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서비스를 말하며, 라디오방송과 TV방송으로 분류된다(KAIT 2007).<sup>47)</sup>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송출이 수직 결합된 특수한 형태의 방송사업자이다. 지상파 방송서비스는 지상의 무선국을 통해 라디오, 텔레비전, 지상

47)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 DMB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지상파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방송수신료를 지불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수신료 이외에 기업의 광고를 실어 광고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다. 이에 분류체계(안)에서는 지상파방송서비스를 라디오방송, TV방송, 지상파DMB로 구분하고, 각각에 방송수신료, 광고, 프로그램판매, 기타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서비스의 수입은 크게 방송수신료, 광고, 협찬, 전파료 수익, 방송프로그램 판매, 기타로 구성된다. 이때 협찬, 전파료수익은 분류체계(안)의 기타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표 4-30〉 지상파방송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400.0000 방송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상파방송서비스
1410.0000 지상파방송서비스	○ 지상파방송서비스
1411.0000 라디오방송	○ 라디오방송
1412.0000 TV방송	○ 광고
1413.0000 지상 DMB	○ 기타
	○ TV방송
	○ 방송수신료
	○ 광고
	○ 프로그램판매
	○ 기타
	○ 지상 DMB
	○ 광고
	○ 프로그램판매
	○ 기타

#### 나. 유료방송서비스

지상파방송서비스가 시청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되는 반면, 유료방송서비스는 다채널 방송을 제공하면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는 유료방송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입 과정을 거치기 때

문에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자유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분류체계(안)에서는 유료방송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SO), IPTV방송, 위성방송, 위성DMB,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으로 유형화하였다.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는 유선방송국과 가입자간 동축 혹은 광케이블을 통해 영상·음향 등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전송 및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다채널 방송서비스이다.<sup>48)</sup> 법률상 용어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인 IPTV방송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 및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한다.<sup>49)</sup> 위성방송서비스는 위성을 이용한 방송서비스로서 인공위성을 통하여 텔레비전 방송 등을 행하는 서비스이다.<sup>50)</sup> 한편 중계유선방송은 1961년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난시청 해소와 지상파 방송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지역밀착형 매체를 말하고, 음악유선방송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매 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KAIT 2007).

기존 분류체계에 IPTV방송을 신설하였으며, 점차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을 유선방송서비스에서 빼내어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으로 묶었다.

분류체계(안)에서는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 하위분류로 크게 수신료, 광고, 홈쇼

48)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4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50)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는 위성방송사업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송출 수수료, 기타방송관련(시설설치, 컨버터 대여)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유료 방송서비스 수신료는 베이직 프로그래밍 패키지(Basic programming package), 프리미엄 프로그래밍 패키지(Premium programming package), PPV 및 VoD(Pay-per-view and video-on-demand) 등으로 구분하였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는 유료방송서비스의 분류를 크게 수신료, 광고, 홈쇼평송출 수수료, 협찬,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나, 분류체계(안)에서는 중요성 측면에서 협찬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IPTV서비스의 경우 기존 1113.9000 기타 초고속통신서비스(일부)로 분류되던 것을 방송서비스에 명시적으로 신설하였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은 아날로그, 디지털 구분이 더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신료 부분을 아날로그, 디지털 방송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기존 분류체계에 있는 종합유선 전송서비스(NO)는 매출 항목 파악 후 해당 매출 분류로 편입하기로 하였다.

〈표 4-31〉 유료방송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방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유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날로그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ul> </li> <li>○ 디지털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ul> </li> <li>○ PPV, VOD</li> </ul> </li> <li>○ 광고</li> <li>○ 홈쇼평송출 수수료</li> <li>○ 기타 방송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li> <li>○ 컨버터 대여</li> <li>○ 기타</li> </ul> </li> </ul> </li> </ul> </li> </ul>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420.0000 유선방송서비스 1421.0000 종합유선방송 1421.1000 종합유선 방송서비스(SO) 1421.2000 종합유선 전송서비스(NO) 1422.0000 중계유선방송 1423.0000 음악유선방송 1430.0000 위성방송서비스 1431.0000 위성방송 1432.0000 위성 D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TV방송</li> <li>○ 수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ul> </li> <li>○ PPV, VOD</li> <li>○ 광고</li> <li>○ 기타 방송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li> <li>○ 컨버터 대여</li> </ul> </li> <li>○ 기타</li> <li>○ 위성방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ul> </li> <li>○ PPV, VOD</li> </ul> </li> <li>○ 광고</li> <li>○ 기타 방송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li> <li>○ 컨버터 대여</li> </ul> </li> <li>○ 기타</li> </ul> </li> <li>○ 위성 D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ul> </li> <li>○ PPV, VOD</li> <li>○ 광고</li> <li>○ 기타</li> </ul> </li> <li>○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계유선방송</li> <li>○ 음악유선방송</li> </ul> </li> </ul>

#### 다. 프로그램 제작·공급

프로그램 제작·공급은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으로 구성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경우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자신의 채널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다.<sup>51)</sup>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의 경우 자체제작과 외부제작

으로 구분되는데, 분류체계(안)의 프로그램 제작업은 자체제작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유통, 공급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KAIT 2007).

분류체계(안)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일반채널과 홈쇼핑채널, 그리고 데이터 채널로 세분화하고, 세부항목을 방송수신료(채널판매),<sup>51)</sup> 광고, 방송프로그램 판매와 기타로 세분화하였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는 세부항목으로 협찬이 포함되어 있으나 분류체계(안)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의 경우 제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 등이 포함된다.

〈표 4-32〉 프로그램 제작·공급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440.0000 프로그램 제작·공급 1441.0000 방송채널사용사업(PP) 1441.1000 일반채널 1441.2000 홈쇼핑채널 1442.0000 프로그램 제작업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제작·공급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제작·공급 <input type="checkbox"/> 방송채널사용사업(PP) <input type="checkbox"/> 일반채널 <input type="checkbox"/> 방송수신료(채널판매) <input type="checkbox"/> 광고 <input type="checkbox"/> 방송프로그램 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홈쇼핑채널 <input type="checkbox"/> 광고수입 <input type="checkbox"/> 판매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데이터채널(DP)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제작업

라. 기타방송서비스

그 외 기타 방송서비스의 경우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였다.

51)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52)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는 방송수신료로 명하고 있다.

〈표 4-33〉 기타 방송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490.0000 기타 방송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방송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방송서비스

### 3. 방송통신기기

#### 가. 방송통신기기 분류체계 작성 개요

방송통신기기 분류체계는 현행 분류체계가 일부 신규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자세한 수준으로 잘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신규 품목을 추가하고, 방송통신 관련 분야를 선별하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하지만 현행 분류체계가 KAIT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와 지식경제부의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통계 시계열의 유지 및 부처 간 통계 불일치의 역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방송통신기기의 수출입 분류체계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하는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를 배제하고 기존 분류체계만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송통신기기 통계를 작성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재 지식경제부가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생산 부문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라 IT 기기, 장비 및 부품(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의 생산 및 수출입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KAIT의 분류체계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KAIT의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삼을 경우 지난 20여 년간의 생산 및 수출 통계 데이터의 시계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류체계(안)에서는 지식경제부의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는 연계 작업을 통해 시계열을 유지하면서도 수출 통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KAIT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방송통신부문 품목분류체계

(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1) 지식경제부의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 소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양 부처에서 사용하던 수출입 통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IT산업 관

〈표 4-34〉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

기존 분류체계(MTI)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
83 전자부품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기기(Core ICT) ○ 전자부품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통신 및 방송기기 ○ 영상 및 음향기기 ○ 광자기 매체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Broad ICT) ○ 의료 정밀 광학기기 - 의료용 기기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 광학기기 및 기타전자응용기기 - 시계 및 시계부품 ○ 가정용기기 ○ 사무용 기기 및 장비 ○ 전기장비 - 일차전지 및 축전지 - 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 전구 및 조명장치 - 기타전기장비
831 반도체	
832 전자관	
833 수동부품	
834 기구부품	
835 건전지 및 축전지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39 기타전자부품	
81 산업용전자제품	
811 유선통신기기	
812 무선통신기기	
813 컴퓨터	
814 전자응용기기	
815 계측제어분석기	
82 가정용전자제품	
821 영상기기	
822 음향기기	
823 냉장고	
824 가정용회전기기	
825 난방 및 전열기기	
826 조명기기	
827 전자시계 및 게임기	
829 기타 가정용전자	
85 전선	
850 전선(통신용)	
71 기초산업기계	
714 사무기기(복사기)	
715 광학기기(패널부품)	

자료: 지식경제부

런 품목분류체계를 조정하였다. 그 결과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산업자원부의 “디지털전자”와 (구)정보통신부의 “IT산업” 수출입 통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고,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4차 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을 반영하여 IT산업 수출입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향상하였다.

“IT산업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체계”는 과거 두개의 부처에서 발표하던 수출입 통계 분류체계를 일정부분 일치시켰고, OECD ICT 산업분류체계를 반영하여 IT산업을 크게 정보통신기기(Core ICT),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Broad ICT)로 분류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T산업과 관련 산업과의 융합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광자기매체 등 IT산업 관련 핵심품목을 정보통신기기(Core ICT)로 통합하고 나머지 관련 품목을 Broad ICT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 나. 방송통신기기 분류체계(안) 작성의 기본 방향

우선 기존 KAIT 분류체계에서 통신기기와 방송기기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부품, 부분품 항목 및 정보기기 항목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이용 단말로서 데스크톱 컴퓨터 및 노트북 컴퓨터가 필수적이며, 최근 스마트폰의 경우 데이터 프로세싱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컴퓨터로 파악하는 입장도 힘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자가 이동성이나 제품의 크기, 사용 양태 등에서 구분된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정보기기는 방송통신기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다. 통신기기

우선 기존 KAIT 분류체계에서 통신기기와 방송기기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통신기기의 경우 기존 분류체계에서 구분이 곤란하거나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부품과 부분품의 경우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USN의 경우 통신기기라기보다는 부품의 특성이 강해 부품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다. 한편 팩시밀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수출과 관련하여 품목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구분이 쉽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였다. 예를 들면 WiBro 중계기의 하위분류인 WiBro 시스템과 중계기를 삭제하였다.

〈표 4-35〉 통신기기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
2100.0000 통신기기	<input type="checkbox"/> 통신기기
2110.0000 유선통신기기	○ 유선통신기기
2111.0000 유선전화기	○ 유선전화기
2112.0000 교환기	○ 유선교환기
2112.100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2112.2000 사설용 교환기	○ 사설용 교환기
2112.3000 소프트 스위치	○ 소프트 스위치
2112.4000 IMS	○ IMS
2112.5000 미디어 게이트웨이	○ 미디어 게이트웨이
2112.9000 기타 교환기	○ 기타 교환기
2113.0000 전송기기	○ 유선전송기기
2113.1000 페어케이블 전송시스템	○ 페어케이블 전송시스템
2113.2000 동축케이블 전송시스템	○ 동축케이블 전송시스템
2113.3000 광전송시스템	○ 광전송시스템
2113.4000 신호변환기	○ 신호변환기
2113.5000 다중화장치	○ 다중화장치
2113.9000 기타 전송기기	○ 기타 전송기기
2114.0000 유선전신기기	○ 유선전신기기
	○ 팩시밀리
	○ 기타전신기기
2115.0000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2116.0000 네트워크 장비	○ 네트워크 장비
2116.1000 유선LAN 장비	○ 유선LAN 장비
2116.2000 무선 LAN 장비	○ 무선 LAN 장비
2116.3000 가입자용 모뎀	○ 가입자용 모뎀
2116.3100 일반 가입자 모뎀(56Kbps)	○ 일반 가입자 모뎀(56Kbps)
2116.3200 케이블 모뎀	○ 케이블 모뎀
2116.3300 xDSL 모뎀	○ xDSL 모뎀
2116.3400 광모뎀	○ 광모뎀
2116.3900 기타가입자용모뎀	○ 기타가입자용모뎀
2116.4000 네트워크 보안장비	○ 네트워크 보안장비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
2116.9000 기타 네트워크 기기	○ 기타 네트워크 기기
2116.9100 홈 네트워크 장비	○ 홈 네트워크 장비
2120.0000 무선통신기기	○ 무선통신기기
2121.0000 무선통신단말기	○ 무선통신단말기
2121.1000 휴대단말기	○ 휴대단말기
2121.1100 CDMA 방식단말기	○ CDMA 방식단말기
2121.1200 GSM 방식단말기	○ GSM 방식단말기
2121.1300 W-CDMA	○ W-CDMA 방식단말기
2121.1400 HSDPA 단말기	○ HSDPA 단말기
2121.1500 WiBro 단말기	○ WiBro 단말기
2121.2000 주파수공용통신단말기(TRS)	○ 주파수공용통신단말기(TRS)
2121.3000 무선표출단말기	○ 무선표출단말기
2121.4000 텔레매틱스	○ 텔레매틱스
2121.5000 USN	
2121.6000 RFID	
2121.9000 기타 무선통신단말기	○ 기타 무선통신단말기
2122.0000 무선통신시스템	○ 무선통신시스템
2122.1000 무선통신용 교환기	○ 무선통신용 교환기
2122.2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 기지국용 송수신기
2122.3000 무선통신용 중계기	○ 무선통신용 중계기
2122.4000 WiBro	○ WiBro 중계기
2122.4100 WiBro 시스템	
2122.4200 WiBro 중계기	
2122.9000 기타무선통신시스템 (선박용 전화전신시스템포함)	○ 기타무선통신시스템 (선박용 전화전신시스템포함)
2123.0000 무선통신송수신기(전신, 전화, 방송용 제외)	○ 무선통신송수신기(전신, 전화, 방송용 제외)
2123.1000 휴대용무전기	○ 휴대용무전기
2123.2000 무선통신용 가입자 모뎀	○ 무선통신용 가입자 모뎀
2123.9000 기타 무선통신송수신기	○ 기타 무선통신송수신기
2128.0000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2128.1000 고주파부분품(RF부분품)	
2128.8000 휴대단말기용 부분품	
2128.9000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2129.0000 기타 무선통신기기	○ 기타 무선통신기기
2129.1000 위성통신기기	○ 위성통신기기
2129.1100 위성통신 지구국(지상국,VSAT포함)	○ 위성통신 지구국(지상국,VSAT포함)
2129.1900 기타 위성통신기기	○ 기타 위성통신기기
2129.9000 기타 무선통신기기	○ 기타 무선통신기기



#### 라. 정보기기

정보기기의 경우 세부적으로 포함 여부에 이론이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정보기기의 대부분이 방송통신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동성, 크기, 사용양태 등이 방송통신부문 통계분류체계에 포함되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외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과 1차적 관련이 적은 정보기기 부문의 컴퓨터 주변기기, 로봇 등은 제외하였다. 컴퓨터의 경우 이를 방송통신기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론이 있었다.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등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로 기능한다는 점, 최근 스마트폰의 데이터 프로세싱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이를 컴퓨터로 파악하고자 하는 추세를 고려하였으나, 컴퓨터 역시 방송통신 부문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마. 방송기기

방송기기의 경우 기존 분류를 대부분 유지하였다. 여기서도 부품 및 부분품 항목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LED TV 등 신규 상품을 반영하고, 일부 분류 명을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송국용 기기를 방송용 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로 분류 명을 변경하였으며, 모바일 라디오를 삭제하였다.

〈표 4-36〉 방송기기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2300.0000 방송기기	<input type="checkbox"/> 방송기기
2310.0000 방송용기기	○ 방송국용기기
2311.0000 방송용 송수신기	○ 방송용 송수신기
2311.1000 지상파방송 송수신기	○ 지상파방송 송수신기
2311.2000 유선방송 송수신기	○ 유선방송 송수신기
2311.3000 위성방송 송수신기	○ 위성방송 송수신기
2311.4000 IPTV 장비	○ IPTV 장비
2311.9000 기타 방송용 송수신기	○ 기타 방송용 송수신기
2312.0000 방송용 가전	○ 방송용 가전
2312.1000 DTV	○ DTV
2312.1100 CRT	○ C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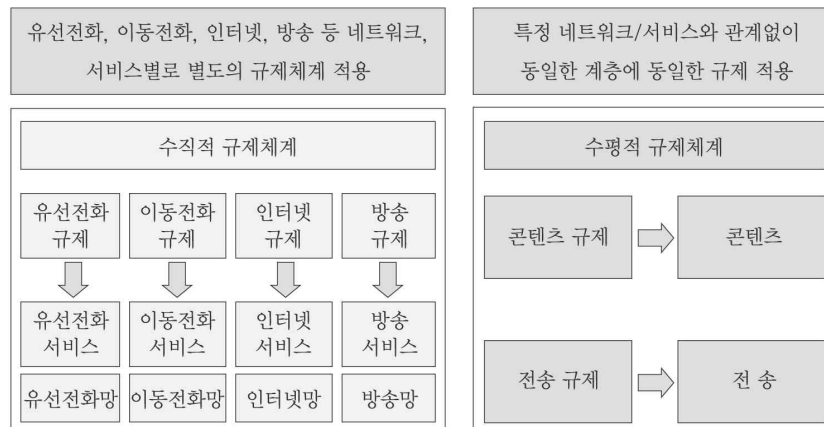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2312.1200 LCD	○ LCD
2312.1300 PDP	○ PDP
2312.1400 Projection	○ Projection
	○ LED
2312.1900 기타	○ 기타
2312.2000 아날로그 TV	○ 아날로그 TV
2312.3000 셋톱박스	○ 셋톱박스
2312.4000 모바일TV(DMB)	○ 모바일TV(DMB)
2312.4100 모바일TV 전용단말기	○ 모바일TV 전용단말기
2312.4200 모바일TV 수신장비	○ 모바일TV 수신장비
2312.5000 모바일라디오	
2313.0000 방송국용기기	○ 방송국용기기
2313.1000 방송국용 비디오기기	○ 방송용 비디오기기
2313.2000 방송국용 오디오기기	○ 방송용 오디오기기
	○ 기타 방송국용기기
2320.0000 디지털 미디어 기기	○ 디지털 미디어 기기
2321.0000 디지털 오디오기기	○ 디지털 오디오기기
2321.1000 MP3	○ MP3
2321.2000 CDP	○ CDP
2321.3000 Voice Recorder	○ Voice Recorder
2321.4000 가라오케시스템(비디오 포함)	○ 가라오케시스템(비디오 포함)
2321.9000 기타 디지털 오디오기기	○ 기타 디지털 오디오기기
2322.0000 디지털 비디오기기	○ 디지털 비디오기기
2322.1000 디지털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2322.2000 디지털 캠코더	○ 디지털 캠코더
2322.3000 DVD플레이어	○ DVD플레이어
2322.4000 PMP	○ PMP
2322.5000 휴대용 게임단말기	○ 휴대용 게임단말기
2322.6000 CCTV 카메라	○ CCTV 카메라
2322.7000 PVR	○ PVR
2322.8000 DVR	○ DVR
2322.9000 기타 디지털 비디오기기	○ 기타 디지털 비디오기기
2322.9100 홈씨어터	○ 홈씨어터
2322.9200 프로젝터	○ 프로젝터
2322.9900 기타	○ 기타
2329.0000 기타 디지털 미디어기기	
2380.0000 방송기기 부분품	
2381.0000 방송용기기 부분품	
2382.0000 디지털미디어기기 부분품	
2389.0000 기타 방송기기 부분품	
2390.0000 기타 방송기기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수요에 대응되는 방송통신부문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산업 혹은 상품의 정의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방송통신의 개념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며, 범위는 정책적 수요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방송통신기기와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세부 분류체계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정책적 혹은 규제적 환경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방송통신부문의 분류체계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의 구조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분류체계는 산업의 생산, 수요, 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방송통신부문 분류체계를 개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규제체계의 변화와 콘텐츠의 범위 설정을 들 수 있다.

[그림 5-1]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비교



자료: 나성현 외(2008)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구현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별로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신규서비스에 유연하고 일관성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중이다. 수평적 규제체계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콘텐츠와 전송계층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통계의 분류체계도 이러한 규제체계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안에 따르면 기간과 별정의 구분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 별정통신서비스 1호와 2호를 통신서비스재판매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간통신과 별정통신의 구분은 전송과 콘텐츠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추세와 맞지 않다. 즉, 콘텐츠의 전송에 직접 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재판매만을 분리하여 분류하고 설비의 임대 등을 통해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유선, 무선 등의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전송과 제작/유통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현재 방송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케이블, 위성, IPTV 등 콘텐츠의 전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업들은 통신서비스 분류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렇지 않지만 국제표준산업분류, 북미표준산업분류 등이 케이블, 위성 방송 등을 유선통신업으로 분류한 것도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가통신과 관련한 범위의 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범위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사업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콘텐츠를 하나의 분류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부가통신서비스내 세부 분류에는 방송통신서비스라고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품목들이 다수 존재한다. 물론,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 유통,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가장 적절한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내 대분류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통신을 목적으로 생성된 콘텐츠(게임, 음악, 영상 등)

만을 포함하는 것이라도 판단된다. 북미표준산업분류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경제와 관련한 대분류를 신설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분류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콘텐츠가 전자적으로 송수신되거나 활용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기존 부가통신서비스내 신용카드검색서비스, 컴퓨터예약서비스,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등 오프라인이나 기타 방식의 활동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체하는 활동은 방송통신산업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며, 실제로 표준산업분류에서도 전통적인 산업내의 활동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들은 부가통신부문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김정언 외(2006),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및 IT산업 분류체계 개선방향 연구”, 수탁 연구 06-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7.
- 김희수 외(2008), “2007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연구 08-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 나성현 외(2008), “통신시장 분류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08-3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 문성배 외(2008), “산업전략 및 정책추진체계 변화에 따른 IT부문 통계체계 개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8-20, 2008. 12.
- 방송위원회(2006),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6
- 방송통신위원회(2007), “200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7
- \_\_\_\_\_ (2008), “200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8
- 변정욱 외(2007), “MVNO 개념 및 주요국의 규제·사업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12.
-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2007), “MTI 수출입통계품목분류”
- IIITA(2007), “IT산업 관련 분류체계 개정을 위한 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7. 3.
- \_\_\_\_\_ (2008), “IT산업 수출입통계 신규 품목분류체계 개선 내용”,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 7. 3.
- 이재영·유선실(2006), “미디어산업의 수직결합과 기업전략”, 연구보고 06-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2.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07. 12. 14), “통신서비스 역무통합 및 허가제도 개선”
- 정현준(2008), “OECD ICT 통계 분류체계 현황 및 국내 ICT 통계체계 개편에 대한

-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 20 권 2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1.
- 통계청(2008),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통계청, 2008.
- \_\_\_\_\_ (2008), “광공업통계조사 산업 및 품목분류표”
- 통신정책연구그룹(2009), “200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연구 09-6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2.
- 한국전산원(2006), “초고속국가망 사업의 발자취”, 한국전산원, 2006. 1.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4), “정보통신산업 분류체계 품목해설서”
- \_\_\_\_\_ (2007), “정보통신산업 분류체계 품목해설서”
- \_\_\_\_\_ (2006),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 \_\_\_\_\_ (2008), “2007 방송통신산업 통계연보”
- \_\_\_\_\_ (2009), “2008 방송통신산업 통계연보”
- 황호을(2000),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 영화조세통람, 조세통람사, 2000.

#### 해외 문헌

- EUROSTAT(2008), “CPA 2008 Introductory Guidelines”, 2008
- \_\_\_\_\_ (2008), “CPA 2008 Structure and explanatory notes”, 2008
- OECD(1997),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CTOR: A DEFINITION”, DSTI/ICCP/AH(97)2, 1997. 6. 2.
- \_\_\_\_\_ (1998a), “SUMMARY RECORD OF THE SECOND AD HOC MEETING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HELD UNDER THE AEGIS OF THE ICCP STATISTICAL PANEL”, DSTI/ICCP/AH/M(98)1/REV1, 1998. 9. 10.
- \_\_\_\_\_ (1998b),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CTOR: A DEFINITION”, DSTI/ICCP/AH(98)1, 1998. 6. 9.
- \_\_\_\_\_ (1999a), “National Accounts,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WORK-

- 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Agenda item 11”, STD/NA(99)48, 1999. 9. 1.
- OECD(1999b), “IMPLEMENTING THE OECD ICT SECTOR DEFINITION: ISSUES FOR DISCUSSION”, WPIIS DSTI/ICCP/IIS(99)3, 1999. 4. 19.
- \_\_\_\_\_(2002), “REVIEWING THE ICT SECTOR DEFINITION: ISSUES FOR DISCUSSION”, DSTI/ICCP/IIS(2002)2, WPIIS DSTI/ICCP/IIS(2002)2, 2002. 4. 17.
- \_\_\_\_\_(2003), “A PROPOSED CLASSIFICATION OF ICT GOODS”, WPIIS, DSTI/ICCP/ IIS(2003)1/REV2, 2003. 11. 13.
- \_\_\_\_\_(2005), “Guide to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WPIIS DSTI/ICCP/IIS (2005)6/FINAL, 2005. 11. 8.
- \_\_\_\_\_(2007a), “CLASSIFY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ERVICES”, WPIIS DSTI/ICCP/IIS(2006)11/FINAL, 2007. 3. 1.
- \_\_\_\_\_(2007b), “Guide to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 \_\_\_\_\_(2007c), “INFORMATION ECONOMY. SECTOR DEFINI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ISIC 4)”, WPIIS DSTI/ICCP/IIS(2006)2/FINAL, 2007. 3. 5
- \_\_\_\_\_(2008. 3), INFORMATION ECONOMY PRODUCT DEFINITIONS BASED ON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VERSION 2), WPIIS DSTI/ICCP/IIS(2008)1, 2008. 3. 12.
- \_\_\_\_\_(2009), “OECD Definitions of the Information Economy Sectors(Annex 1B),” in Guide to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OECD, Ed. Paris, France, 2009.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1994), “Economic Classification Policy Committe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placement,” Federal Register, 59(142), July 1994.
- \_\_\_\_\_(1995), “Economic Classification Policy Committe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placement-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Proposed Industry Classification Structure,”  
Federal Register, 60(143), July 1995.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2000),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Update for 2002,” Federal Register, 65(77), April 2000.

\_\_\_\_\_ (2005),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Update for 2007,” Federal Register, 70(47), March 2005.

UN statistics commission(2008), Detailed structure and correspondences of CPC Ver.2 subclasses to ISIC Rev.4 and HS 2007, UN

United Nations(2008),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 4, Statistical Paper Series M No.4/Rev.4, New York, 2008.

#### 웹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http://www.kait.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ITSTAT: <http://www.itstat.go.kr>

OECD: <http://www.oecd.org>

UN통계처: <http://unstats.un.org>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부 록〉

## 방송통신부문 분류체계(안)

〈표 1〉 통신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1000 가입자접속서비스 1111.1100 기본서비스 1111.1200 장치서비스 1111.1300 가입서비스 1111.2000 시내전화서비스 1111.2100 시내통화 1111.2110 일반통화 1111.2120 LM통화 1111.2200 부가서비스 1111.2210 CID 1111.2220 기타 1111.2900 기타 시내전화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전화서비스</li> <li>○ 가입자접속서비스</li> <li>○ 기본서비스</li> <li>○ 장치서비스</li> <li>○ 가입서비스</li> <li>○ 시내전화서비스- 주거용</li> <li>○ 시내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통화</li> <li>○ LM통화</li> </ul> </li> <li>○ 시내전화서비스- 기업용</li> <li>○ 시내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통화</li> <li>○ LM통화</li> </ul> </li> </ul>
1111.2000 시내전화서비스 1111.2200 부가서비스 1111.2210 CID 1111.2220 기타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전화 부가서비스</li> <li>○ 발신자표시(CID)</li> <li>○ 기타</li> </ul>
1111.3000 시외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외전화서비스</li> <li>○ 시외전화서비스- 주거용</li> <li>○ 시외전화서비스- 기업용</li> </ul>
1111.4000 국제전화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전화서비스</li> </ul>
1111.6000 지능망서비스 1111.6100 시내전화 1111.6200 시외전화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망서비스</li> <li>○ 무료전화</li> <li>○ 전국대표번호</li> <li>○ 평생번호</li> <li>○ 콜렉트콜</li> <li>○ 전화투표 등 전화서베이</li> <li>○ 기타</li> </ul>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111.9000 인터넷전화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전화 (기간)</li> <li>○ IP폰</li> <li>○ 소프트폰</li> </ul>
1111.7000 공중전화서비스 1111.7100 일반통화 1111.7200 LM통화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전화서비스</li> <li>○ 일반통화</li> <li>○ LM통화</li> </ul>
1111.8000 통합디지털서비스네트워크(ISDN) 1230.0000 구내통신 1111.2900 기타 시내전화	<input type="checkbox"/> 전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유선전화서비스</li> <li>○ 통합디지털서비스네트워크 (ISDN)</li> <li>○ 구내통신</li> <li>○ 기타 전화서비스</li> </ul>
1110.0000 유선통신서비스 1111.0000 전화서비스 1111.1000 가입자접속서비스 1111.1400 가입자선로접속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통신서비스사업자(Carrier) 서비스 및 인터넷 백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접속회선료(장비설치료)</li> <li>○ 유선망접속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속료 LL</li> <li>○ 접속료 ML</li> </ul> </li> <li>○ 무선망접속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속료 LM</li> <li>○ 접속료 MM</li> </ul> </li> <li>○ 인터넷 백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접속회선료</li> <li>○ 접속료</li> </ul> </li> </ul>
1112.0000 전용회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용회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외 전용회선서비스</li> <li>○ 국제 전용회선서비스</li> <li>○ 방송 전용회선서비스</li> </ul>
1113.0000 초고속망 서비스 1113.100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1113.1100 케이블모뎀 서비스 1113.1200 xDSL서비스 1113.1300 위성 1113.1400 아파트랜 1113.1500 무선랜 1113.1600 WiBro 1113.1900 기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1113.2000 초고속국가망서비스 1113.9000 기타 초고속통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초고속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xDSL</li> <li>○ HFC</li> <li>○ LAN</li> <li>○ FTTH</li> <li>○ 위성</li> <li>○ 기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li> </ul> </li> <li>○ 초고속국가망서비스</li> <li>○ 기타 초고속통신서비스</li> </ul>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310.0000 네트워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네트워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서비스</li> <li>○ VPN</li> <li>○ ATM</li> <li>○ Frame relay</li> <li>○ 기타 네트워크서비스</li> </ul>
1114.0000 전신,전보서비스 1119.0000 기타 유선통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신·전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선통신서비스
1120.0000 무선통신서비스 1121.0000 이동통신서비스 1121.1000 이동전화서비스 1121.1100 셀룰러+PCS 1121.1110 음성통신 1121.1111 MM서비스 1121.1112 ML서비스 1121.1120 데이터통신 1121.1121 SMS 1121.1122 WAP/ME 1121.1129 기타 데이터통신 1121.1130 부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동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전화서비스-2G</li> <li>○ 음성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M 서비스</li> <li>○ ML 서비스</li> </ul> </li> <li>○ 데이터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S</li> <li>○ WAP/ME</li> </ul> </li> <li>○ 인터넷 직접접속</li> <li>○ M2M서비스</li> <li>○ 기타 데이터통신</li> <li>○ 이동전화서비스-3G</li> <li>○ 음성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M 서비스</li> <li>○ ML 서비스</li> </ul> </li> <li>○ 데이터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S</li> <li>○ WAP/ME</li> </ul> </li> <li>○ 인터넷 직접접속</li> <li>○ M2M서비스</li> <li>○ 기타 데이터통신</li> <li>○ 이동전화 부가서비스</li> <li>○ 위치착신서비스</li> <li>○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li> <li>○ 기타</li> </ul>
1113.1500 무선랜 1113.1600 WiBro 1122.0000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LL)	<input type="checkbox"/>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iBro(휴대인터넷)</li> <li>○ 무선랜</li> <li>○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LL)</li> </ul>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유무선통합서비스(F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무선통합서비스(FMC)-개인용</li> <li>○ 유무선통합서비스(FMC)-기업용</li> </ul>
1121.2000 주파수공용통신(TRS)	<input type="checkbox"/> 주파수공용통신(TRS)
1121.3000 무선데이터통신	<input type="checkbox"/> 무선데이터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S</li> <li>○ M2M서비스</li> <li>○ 원격제어,검침</li> <li>○ 교통정보서비스</li> <li>○ 물류지원서비스</li> <li>○ 모바일결제</li> <li>○ 기타</li> </ul>
1121.4000 무선호출	<input type="checkbox"/> 무선호출 및 메시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호출 서비스</li> <li>○ 메시징 서비스</li> </ul>
1121.9000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동통신 서비스
1123.0000 위성통신서비스 1123.1000 국내위성통신서비스 1123.2000 국제위성통신서비스 1123.3000 GMPCS서비스 1123.9000 기타 위성통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위성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위성통신서비스</li> <li>○ 국제위성통신서비스</li> <li>○ GMPCS서비스</li> <li>○ 기타 위성통신서비스</li> </ul>
1200.0000 별정통신서비스 1210.0000 설비보유재판매 1211.0000 음성재판매 1212.0000 인터넷전화 1213.0000 국제콜백전화 1214.0000 국제회선재판매 1215.0000 초고속접속서비스 1219.0000 기타 1220.0000 설비미보유재판매 1221.0000 재과금서비스 1222.0000 호집중서비스 1223.0000 인터넷전화 1224.0000 무선재판매 1225.0000 초고속접속서비스 1230.0000 구내통신	<input type="checkbox"/>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통신재판매</li> <li>○ 유선전화</li> <li>○ 시외전화</li> <li>○ 국제전화</li> <li>○ 인터넷전화</li> <li>○ 인터넷접속서비스</li> <li>○ 국제회선재판매</li> <li>○ 무선통신재판매</li> <li>○ 음성</li> <li>○ 데이터</li> </ul> <input type="checkbox"/>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통신</li> <li>○ 재과금서비스</li> <li>○ 호집중서비스</li> <li>○ 무선통신</li> <li>○ 재과금서비스</li> <li>○ 호집중서비스</li> </ul> <input type="checkbox"/> 기타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300.0000 부가통신서비스 1310.0000 네트워크서비스 1320.0000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1321.0000 인터넷접속기반 서비스 1322.0000 호스팅 및 관리 서비스 1322.1000 호스팅서비스(웹,서버,스토리지) 1322.2000 Co-location 1322.3000 보안관리 서비스 1322.4000 도메인관리 서비스 1322.5000 홈페이지제작 서비스 1322.9000 기타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관리 및 지원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관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호스팅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보안 관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도메인 관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지원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Co-location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전송 지원 서비스
1330.0000 부가통신응용서비스 1331.0000 고도팩스서비스 1332.0000 신용카드검색(CCIS)서비스 1333.0000 컴퓨터예약(CRS)서비스 1334.0000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 1335.0000 원격통신서비스 1336.0000 전자지불서비스 1337.0000 온라인정보처리 1338.0000 인터넷전자상거래(수수료) 1339.0000 기타 부가통신응용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부가통신 응용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고도팩스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검색(CCIS)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원격통신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지불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정보처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중개 및 온라인상거래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정보중개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예약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스토리지 공유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1340.0000 콘텐츠제공서비스 1341.0000 콘텐츠제공서비스(전화수수료) 1342.0000 콘텐츠제공서비스(인터넷·모바일) 1342.1000 인터넷 방송 1342.2000 인터넷 게임 1342.3000 온라인 교육(e-러닝) 1342.4000 정보제공 1342.4100 금융/경제 1342.4200 가정/생활 1342.4300 엔터테인먼트 1342.4400 의료/법률 1342.4900 기타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제공 및 포털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음성 콘텐츠 제공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음성 콘텐츠 제공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번호안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웹캐스팅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게임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교육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문정보 제공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영상 제공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음향 제공 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342.5000 디지털 미디어 1342.5100 디지털영상 1342.5200 디지털음악 1342.5210 벨소리 1342.5220 통화대기음 1342.5290 기타 1342.6000 디지털출판물(e-book, 만화 등) 1342.7000 인터넷광고(배너, 검색광고) 1342.9000 기타 1349.0000 기타_콘텐츠서비스 1111.5000 번호안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출판물 제공 서비스</li> <li>○ 인터넷 검색 포털 서비스</li> <li>○ 인터넷 광고 서비스</li> <li>○ 인터넷 광고 서비스</li> </ul>
1390.0000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부가통신서비스</li> </ul>

〈표 2〉 방송서비스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1400.0000 방송서비스 1410.0000 지상파방송서비스 1411.0000 라디오방송 1412.0000 TV방송 1413.0000 지상 DMB	<input type="checkbox"/> 지상파방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방송서비스</li> <li>○ 라디오방송</li> <li>○ 광고</li> <li>○ 기타</li> <li>○ TV방송</li> <li>○ 방송수신료</li> <li>○ 광고</li> <li>○ 프로그램판매</li> <li>○ 기타</li> <li>○ 지상 DMB</li> <li>○ 광고</li> <li>○ 프로그램판매</li> <li>○ 기타</li> </ul>
1420.0000 유선방송서비스 1421.0000 종합유선방송 1421.1000 종합유선 방송서비스(So) 1421.2000 종합유선 전송서비스(No) 1422.0000 중계유선방송 1423.0000 음악유선방송 1430.0000 위성방송서비스 1431.0000 위성방송 1432.0000 위성 DMB	<input type="checkbox"/> 유료방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유선방송</li> <li>○ 수신료</li> <li>○ 아날로그 방송</li>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디지털 방송</li>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ul>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PPV, VoD</li> <li>○ 광고</li> <li>○ 홈쇼핑송출 수수료</li> <li>○ 기타 방송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li> <li>○ 컨버터 대여</li> </ul> </li> <li>○ 기타</li> <li>○ IPTV방송</li> <li>○ 수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PPV, VoD</li> </ul> </li> <li>○ 광고</li> <li>○ 기타 방송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li> <li>○ 컨버터 대여</li> </ul> </li> <li>○ 기타</li> <li>○ 위성방송서비스</li> <li>○ 위성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PPV, VoD</li> </ul> </li> <li>○ 광고</li> </ul> </li> <li>○ 기타 방송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li> <li>○ 컨버터 대여</li> </ul> </li> <li>○ 기타</li> <li>○ 위성 D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직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프리미엄프로그래밍 패키지</li> <li>○ PPV, VoD</li> </ul> </li> <li>○ 광고</li> <li>○ 기타</li> </ul> </li> <li>○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li> <li>○ 중계유선방송</li> <li>○ 음악유선방송</li> </ul>
1440.0000 프로그램 제작·공급 1441.0000 방송채널사용사업(PP) 1441.1000 일반채널 1441.2000 홈쇼핑채널 1442.0000 프로그램 제작업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제작·공급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제작·공급 <input type="checkbox"/> 방송채널사용사업(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수신료(채널판매)</li> </ul> </li> </ul>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li> <li>○ 방송프로그램 판매</li> <li>○ 기타</li> <li>○ 홈쇼핑채널</li> <li>○ 광고수입</li> <li>○ 판매 수수료</li> <li>○ 데이터채널(DP)</li> <li>○ 기타</li> <li>○ 프로그램 제작업</li> </ul>
1490.0000 기타 방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타 방송서비스</li> <li>○ 기타 방송서비스</li> </ul>

〈표 3〉 방송통신기기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
2100.0000 통신기기	<input type="checkbox"/> 통신기기
2110.0000 유선통신기기	○ 유선통신기기
2111.0000 유선전화기	○ 유선전화기
2112.0000 교환기	○ 유선교환기
2112.100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2112.2000 사설용 교환기	○ 사설용 교환기
2112.3000 소프트 스위치	○ 소프트 스위치
2112.4000 IMS	○ IMS
2112.5000 미디어 게이트웨이	○ 미디어 게이트웨이
2112.9000 기타 교환기	○ 기타 교환기
2113.0000 전송기기	○ 유선전송기기
2113.1000 페어케이블 전송시스템	○ 페어케이블 전송시스템
2113.2000 동축케이블 전송시스템	○ 동축케이블 전송시스템
2113.3000 광전송시스템	○ 광전송시스템
2113.4000 신호변환기	○ 신호변환기
2113.5000 다중화장치	○ 다중화장치
2113.9000 기타 전송기기	○ 기타 전송기기
2114.0000 유선전신기기	○ 유선전신기기
	○ 팩시밀리
	○ 기타전신기기
2115.0000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2116.0000 네트워크 장비	○ 네트워크 장비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
2116.1000 유선LAN 장비	○ 유선LAN 장비
2116.2000 무선 LAN 장비	○ 무선 LAN 장비
2116.3000 가입자용 모뎀	○ 가입자용 모뎀
2116.3100 일반 가입자 모뎀(56Kbps)	○ 일반 가입자 모뎀(56Kbps)
2116.3200 케이블 모뎀	○ 케이블 모뎀
2116.3300 xDSL 모뎀	○ xDSL 모뎀
2116.3400 광모뎀	○ 광모뎀
2116.3900 기타가입자용모뎀	○ 기타가입자용모뎀
2116.4000 네트워크 보안장비	○ 네트워크 보안장비
2116.9000 기타 네트워크 기기	○ 기타 네트워크 기기
2116.9100 홈 네트워크 장비	○ 홈 네트워크 장비
2120.0000 무선통신기기	○ 무선통신기기
2121.0000 무선통신단말기	○ 무선통신단말기
2121.1000 휴대단말기	○ 휴대단말기
2121.1100 CDMA 방식단말기	○ CDMA 방식단말기
2121.1200 GSM 방식단말기	○ GSM 방식단말기
2121.1300 W-CDMA	○ W-CDMA 방식단말기
2121.1400 HSDPA 단말기	○ HSDPA 단말기
2121.1500 WiBro 단말기	○ WiBro 단말기
2121.2000 주파수공용통신단말기(TRS)	○ 주파수공용통신단말기(TRS)
2121.3000 무선폭출단말기	○ 무선폭출단말기
2121.4000 텔레매틱스	○ 텔레매틱스
2121.5000 USN	
2121.6000 RFID	
2121.9000 기타 무선통신단말기	○ 기타 무선통신단말기
2122.0000 무선통신시스템	○ 무선통신시스템
2122.1000 무선통신용 교환기	○ 무선통신용 교환기
2122.2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 기지국용 송수신기
2122.3000 무선통신용 중계기	○ 무선통신용 중계기
2122.4000 WiBro	○ WiBro 중계기
2122.4100 WiBro 시스템	
2122.4200 WiBro 중계기	
2122.9000 기타무선통신시스템 (선박용 전화전신시스템포함)	○ 기타무선통신시스템 (선박용 전화전신시스템포함)
2123.0000 무선통신송수신기 (전신, 전화, 방송용제외)	○ 무선통신송수신기 (전신, 전화, 방송용제외)
2123.1000 휴대용무전기	○ 휴대용무전기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
2123.2000 무선통신용 가입자 모뎀 2123.9000 기타 무선통신송수신기 2128.0000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2128.1000 고주파부분품(RF부분품) 2128.8000 휴대단말기용 부분품 2128.9000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2129.0000 기타 무선통신기기 2129.1000 위성통신기기 2129.1100 위성통신 지구국 (지상국, VSAT포함) 2129.1900 기타 위성통신기기 2129.9000 기타 무선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통신용 가입자 모뎀</li> <li>○ 기타 무선통신송수신기</li>   <li>○ 기타 무선통신기기</li> <li>○ 위성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통신 지구국(지상국, VSAT포함)</li> <li>○ 기타 위성통신기기</li> </ul> </li> <li>○ 기타 무선통신기기</li> </ul>
2300.0000 방송기기 2310.0000 방송용기기 2311.0000 방송용 송수신기 2311.1000 지상파방송 송수신기 2311.2000 유선방송 송수신기 2311.3000 위성방송 송수신기 2311.4000 IPTV 장비 2311.9000 기타 방송용 송수신기 2312.0000 방송용 가전 2312.1000 DTV 2312.1100 CRT 2312.1200 LCD 2312.1300 PDP 2312.1400 Projection  2312.1900 기타 2312.2000 아날로그 TV 2312.3000 셋톱박스 2312.4000 모바일TV(DMB) 2312.4100 모바일TV 전용단말기 2312.4200 모바일TV 수신장비 2312.5000 모바일라디오 2313.0000 방송국용기기 2313.1000 방송국용 비디오기기 2313.2000 방송국용 오디오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기기</li> <li>○ 방송국용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용 송수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방송 송수신기</li> <li>○ 유선방송 송수신기</li> <li>○ 위성방송 송수신기</li> <li>○ IPTV 장비</li> <li>○ 기타 방송용 송수신기</li> </ul> </li> </ul> </li> <li>○ 방송용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T</li> <li>○ LCD</li> <li>○ PDP</li> <li>○ Projection</li> <li>○ LED</li> </ul> </li> <li>○ 기타</li> </ul> </li> <li>○ 아날로그 TV</li> <li>○ 셋톱박스</li> <li>○ 모바일TV(D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TV 전용단말기</li> <li>○ 모바일TV 수신장비</li> </ul> </li> <li>○ 방송국용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용 비디오기기</li> <li>○ 방송용 오디오기기</li> </ul> </li> <li>○ 기타 방송국용기기</li> </ul>

현행 KAIT 분류체계(2007년)	개정 분류체계
2320.0000 디지털 미디어 기기 2321.0000 디지털 오디오기기 2321.1000 MP3 2321.2000 CDP 2321.3000 Voice Recorder 2321.4000 가라오케시스템 (비디오 포함) 2321.9000 기타 디지털 오디오기기 2322.0000 디지털 비디오기기 2322.1000 디지털 카메라 2322.2000 디지털 캠코더 2322.3000 DVD플레이어 2322.4000 PMP 2322.5000 휴대용 게임단말기 2322.6000 CCTV 카메라 2322.7000 PVR 2322.8000 DVR 2322.9000 기타 디지털 비디오기기 2322.9100 홈씨어터 2322.9200 프로젝터 2322.9900 기타 2329.0000 기타 디지털 미디어기기 2380.0000 방송기기 부분품 2381.0000 방송용기기 부분품 2382.0000 디지털미디어기기 부분품 2389.0000 기타 방송기기 부분품 2390.0000 기타 방송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미디어 기기</li> <li>○ 디지털 오디오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P3</li> <li>○ CDP</li> <li>○ Voice Recorder</li> </ul> </li> <li>○ 가라오케시스템 (비디오 포함)</li> <li>○ 기타 디지털 오디오기기</li> <li>○ 디지털 비디오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카메라</li> <li>○ 디지털 캠코더</li> <li>○ DVD플레이어</li> <li>○ PMP</li> <li>○ 휴대용 게임단말기</li> <li>○ CCTV 카메라</li> <li>○ PVR</li> <li>○ DVR</li> </ul> </li> <li>○ 기타 디지털 비디오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씨어터</li> <li>○ 프로젝터</li> <li>○ 기타</li> </ul> </li> </ul>

● 저 자 소 개 ●

---

문 성 배

- 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
-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현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연구위원

정 현 준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수료
- 현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주임연구원

정책연구 09-71

방송통신 분야 통계 분류체계 연구

---

---

2009년 12월 일 인쇄

2009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인 성 문화

ISBN 978-89-8242-666-7 93320

---

---